

현안분석 2006-

비교법제연구 2006-12

日本の 公共서비스 改革法制 研究
- 市場化테스트(관민경쟁입찰)를 중심으로 -

李斗領

日本の 公共서비스 改革法制 研究
- 市場化테스트(관민경쟁입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on Reform of Public Services
in Japan with reference to Market Testing Law
- Public-Private Competition Bid -

研究者: 李斗領 副研究
Lee, Doo-Yo

2006. 10. 31.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민영화에 관한 법운용의 실례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한 법률(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시장화테스법이라고도 함)의 체계에 관해서 개괄하면서, 특히 공공사업에 관한 ‘競争(公開)入札制度(民間競争入札制度)’에 관한 법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소개하면서, 특히 시장화테스트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에서 문제시 될 만한 과제들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의 제정 배경은 기존의 행정에 의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재원 운용과 공익사업의 적합성을 시정하려는 입장에서 실제적인 민영화의 실용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법제화에 이르렀다. 특히 민영화의 이론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공공사업의 형태와 운용의 변화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견지에서 분석한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은 70년대 80년대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inflation)현상, 석유가격의 고가 등으로 공공부분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이 둔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그 개선 방안으로 민간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민간의 자본에 의한 국정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종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던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競争入札’을 통해 낙찰한 당사자, 즉 행정이 존속하는 경우와 행정기관이 낙찰에 실패하여 민간사업자가 실행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을 위임하게 되는 제

도에 대해 공공서비스의 수행주체의 변화에 따른 법제적인 측면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民間競争入札”의 성격을 가지면서 실시할 예정인 입법취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제정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운용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의 개혁기본방침의 책정에 참고가 되었으며 하는 기대감과 官民競争入札을 상세히 검토하며, 이러한 법운용의 프로세스를 통해 특히 낙찰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지침과 운용상의 유의점 등에 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본고에서의 분석을 통한 향후의 기대효과로는 민간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실시 될 경우의 공익확보의 법제 파악, 공공재원의 합리적 운영,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공공서비스의 행위주체의 변화에 관한 분석, 중국적으로 행정책임의 다양화와 감독의 형태 파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의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선의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실시되어 왔다. 먼저 官(행정기관)에서 民으로 전환하는 경우, 즉 행정주체에 의한 사무집행에서 민간주체에 의한 공적사무의 수행 전환의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법적 내지는 실무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장화테스트법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사무를 단순히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시장으로 외주화(Out Sourcing)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외주화(Competitive Sourcing)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중진의 민영화에서도 문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위의 시장화테스트법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타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본고의 특징이다.

일본 공공서비스 개혁법제의 분석의 기대효과

【

공익확보를 위한 법제 파악

공공재원에 대한 합리적 운영과 방향을 제시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유도

공공서비스의 행위주체의 변화에 관한 법제적인 문제점을 제시

종구적으로 행정책임의 다양화와 감독의 형태에 관한 방향 제시

■

■

※

키워드 : 시장화테스트,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개혁, 관민경쟁입찰,
관민경쟁등감리위원회, 민영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legislative system of "Market Testing Law" newl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use of the law about privatization in Japan. In particular, I examine an issue of the law concerning public works.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plan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focusing on Market Testing Law, which gives us future implications of the problems with which Korea will meet. They adopted this new legislation with the intension of re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practical use of privatization, attempting to amend the oper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bout public services and the fitness of public affairs under the existing administration. Especially, based on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privatization, we should then analyze some critical issues of alterations in type and operation of public affairs.

Historically, as the developed countries like England were faced with a difficult situation in which public spending was grown and the recovery was slowed down because of wage gains, inflation, and raised oil price, they adopted this legislative system to promote rationalization and efficiency in administering the works of state with private fun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ystem in which there is an opening up of public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when the administration fails to make a successful bi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fter all,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deduce some suggestions for us to operate the system by analyz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at is administrated with competitive bids to improve public services in quality and understanding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legislation. In the expectation of being a good guide to the arrangement of standard legislation reform in Korea, I investigate Public-Private Competition Bid in detail and introduce the guideline of the private sector that is useful to administrative law.

In addition, when public services are done by the private sector, we will have some expectation effects of the legislation reform. What we can expect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understanding of the legislation for the public good, (2) the reasonable use of public resource, (3) the stimulation of economic activity, (4) the analysis about the degeneration or change of the agents in public services, and (5) the new direction of the diversity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the type of management system.

In general, the debate on the reform of public affairs has been hel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First of all, it is considered crucial to examine possible drawbacks when there is a change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We should also note that Market Testing Law is not the one that leads us to make the outsourcing of administrative service to the public sector but the one that makes it possible to make competitive sourcing through competition.

All in all,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rket Testing Law in re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of privatization. This study also gives us a clue to the solution of possible problems caused by the new legislation.

The expectation effects of the legislation reform of public services in Japan

Understanding of the legislation for the public good

The actual state of the reasonable use of public resources and its direction

The stimulation of economic activity by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services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ve problem about the change of agents in public services

Introduction of the new direction of the diversity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the type of management system

※

Key Words : Public-Private Competition
[open] tender, Market Testi
Competitive Sourcing, Cor
government, Privatization,
sector, Efficiency, Transpare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취지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17
제 3 절 연구의 대상	19
제 2 장 공공서비스개혁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21
제 1 절 공공서비스개혁의 배경	21
1. 정부업무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과 배경	21
2. 민영화의 비판적 측면	26
3. 종전민영화 수단과 상이점	28
4. 公共 “서비스” 개념의 확대와 명확성	30
제 2 절 공공서비스개혁 전제조건	33
1. 공적주체에 의한 비용의 정확한 확보	33
2. 경쟁조건의 균일화	35
3. 정보의 非對稱性의 배제	36
4. 시장을 歪曲하는 공적분야의 권력성과 자의성 배제	37
5. 공평·중립적인 입찰의 체제·절차와 중립적 주체에 의한 평가	38

제 3 절 공공서비스개혁 기본원칙	39
1. 경쟁환경의 구축과 투명성·중립성·공공성의 확보	39
2. 고객주의의 확립	40
3. 최적의 수단선택을 위한 환경정비	40
4. 관민의 역할의 구축	41
5. 새로운 공익의 다원적인 구축	42
제 4 절 공공서비스개혁의 종류와 범위	45
1. 공공서비스개혁의 종류	45
2. 공공서비스개혁의 범위	49
제 3 장 시장화테스트법의 분석	51
제 1 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제정목적	51
1. 제정의 배경	51
2. 제정의 취지	51
제 2 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주요내용	52
1.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과 특례	52
2. 官民競争入札等監理委員會	58
3. 관민경쟁입찰 제도의 프로세스	60
4.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행정기관 등)	70
5. 관민경쟁입찰을 위한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역할	80
6.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관민경쟁입찰	84
제 4 장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사점	89
제 1 절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89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등의 문제점	89

2. 관민경쟁입찰 후의 공무원의 처우	92
3. 민간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	95
제 2 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시사점	96
1.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96
2.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	98
3. 정부관여의 최소화와 질적 제고	100
4. 그 이외 남겨진 문제점과 시사점	101
참 고 문 헌	105
법 률 번 역	10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취지

현재 일본에서는 공공부분의 사업에 대해 민영화가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사업의 형태가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시장화테스트법이라고도 함)’의 제정¹⁾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대해 민영화의 쟁점 사항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민영화에 관한 움직임에 관한 법운용의 실례를 새로이 제정한 상기의 법률의 체계에 대해서 개요하면서, 특히 공공사업에 관한 ‘競争(公開)入札制度’에 관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소개하면서, 특히 시장화테스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향후 한국에서의 문제시 될 만한 과제들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정부시장의 개방에 의한 시장화테스트의 도입)의 제정 배경은 기존의 행정에 의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원 운용과 공익사업의 적합성을 제고하면서 실제적인 민영화의 실용단계에서 문제가 가시화 되는 공공서비스 법제의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으로 법제화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정 배경을 파악한 후, 민영화의 이론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공공사업의 형태, 운용변화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견지에서 분석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일본의 공공사업에 관한 공개입찰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운영과 정부시

1) 2006년 2월 10일 内閣府 政策總括官(經濟社會시스템담당)소관부서에서 제164회 통상국회에 제출하여 2006년 5월 26일 일본 국회 參議院에서 可決, 成立되었다. 公布日은 2006년 6월 2일, 法律 제51호이며, 施行日은 2006년 7월 7일이다.

장에 대한 시장원리에 대해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영화란 공기업의 매각을 의미하는 공익사업(가스 수도 전화 전기 사업 등), 공공서비스 공기업의 민영화는 물론이며, 각종 국가의 행정조직 내의 행정기능과 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기업인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행정의 기능과 사무이양의 전형적인 것이 ‘바우처(Voucher System) 제도²⁾이며, 이외에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³⁾’,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즉 공익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민간부문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간화(민영화)의 형태는 외부위탁화, 경쟁입찰, 공공자산의 매각, 민간자금활용형(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⁴⁾, PFI法이라고도 함)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2) 공공서비스 또는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바우처제도’와 ‘계약에 의해 민간에 이양’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정부는 바우처제도에 의해 민간으로부터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특정수혜자에게 현금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진 증서를 교부한다. 원래 ‘바우처’라는 것은 원래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의미한다.
- ② 3) 경쟁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의 양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민영화의 한 유형이다.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Contracting-Out)’이란 공무원이나 정부가 고용한 종업원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행정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민간업자와 계약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 행정조직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담당업무 중에서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만을 민간에게 공급하게 한다.
- ③ 4)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란, 공공시설 등의 건설, 유지 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해 실시하는 새로운 수법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민간의 자금, 경영 능력, 기술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PFI 수법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野田由美子, 民営化の戦略と手法 PFIからPPPへ, 日本経済新聞社, 2004年. 26 30면 참조. 宮脇淳, PPPが地域を変える アウトソーシングを超えて 官民協働の進化形, ぎょうせい, 2005年, 10 11면 참조.

그리고 본 연구의 출발점은 단순히 공공업무라는 ‘Utility(공공사업)’에 대한 단순한 업무주체의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적주체의 책임과 다양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적주체에 의해서도 실시 가능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업무 주체의 변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도입한 상기의 시장화테스트법의 법제도적 의의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검토하는 공공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의 확대는 향후 우리에게 있어 정책 내지는 이러한 분야의 법제화가 가시화 될 경우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시장화테스트 제도의 淵源的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은 70년대 80년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inflation)현상, 석유가격의 고가 등으로 공공부분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이 둔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그 개선 방안으로 민간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민간의 자본에 의한 국정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고에서는 민영화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인 ‘공공사업에 관한 공개입찰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쟁점을 정리하여 행정책임의 형태의 변화 및 목적에 관해 향후 문제시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법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실시한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민영화의 문제와 정부가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민영화의 하나의 방편 내지는 방안으로 시장화테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범위는 종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어온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競争入札을 통해 낙찰한 당사자(즉 행정이 존속하는 경우와 낙찰에 실패하여 민간사업자가 실행하는 경우)에게 당해 사업을 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위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民間競争入札”의 성격을 가지면서 실시할 예정인 입법취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제정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운용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더욱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의 개혁기본방침의 책정에 참고가 되었으며 하는 기대감과 官民경쟁입찰 및 民間경쟁입찰을 상세히 검토하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특히 낙찰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지침과 운용상의 유의점 등에 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의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외국법제에 대한 단순한 운영사례(예를 들면, 미국 또는 영국의 교도소 시설의 민영화 등)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의 민영화 형태 중에서 (관민)경쟁입찰도입에 의한 법률제정에 따라 향후 시행될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청구, 호적등본 교부의 청구 및 引渡(인도=교부)의 업무 등, 시행할 사업 또는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며, 한국에서 공공의 업무(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경우 시행함에 있어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부분을 소개하며 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법제적인 문제와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의 분석을 통한 향후의 기대효과로는 민간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실시 될 경우의 공익확보의 법제 파악, 공공재원의 합리적 운영,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공공서비스의 행위주체의 변질과 변화에 관한 분석, 중국적으로 행정책임의 다양화와 감독의 형태 파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대상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의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선의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성을 가지면서 실시되어 왔다. 먼저 현재까지의 공공서비스가 官(행정기관)에서 民(행정주체에 의한 사무집행에서 민간주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수행 또는 업무전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어떠한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시장화테스트법의 특징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사무를 단순히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시장으로 외주화(Out Sourcing)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외주화(Competitive Sourcing)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민영화 수법은 예를 들어, 현재 自治體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指定管理者制度’와 ‘地方獨立行政法人’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었다.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인권에 대한 법적보장의 미비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창출의 기회에 편중되어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약정(계약) 불이행시의 경영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법적 안전망이 부족한 점.

주민을 위한 시설과 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요청이며, 自治體 관계자와 사업자의 부정할 결합(예를 들면, 官製談合[관계담합] 등)에 대비한 방어체도가 미비하다는 점.

고용문제의 경우 법적인 분쟁은 自治體와 사업자에 있어서는 물론 피고용자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의 부담은 크다고 할 것이나, 고용문제를 방지하는 법적조치가 미비하다는 점.

이러한 종전의 민영화에서도 문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위의 시장화테스트법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파생되는 여타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본고의 주안점이다.

제2장 공공서비스개혁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제1절 공공서비스개혁의 배경

1. 정부업무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과 배경

시장화테스트라는 것은 미리 공적주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운용을 제거하거나 퇴출시킨다고 상정한 제도는 아니다. 즉 단순히 기존의 公的主體에서 民間事業者에게로 권한 이양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시장화테스트법의 제정 배경에 있어서의 思考는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 효율적인 주체가 官(행정주체)이기도 하다면, 民(민간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경쟁체제 속에서 공적부문 자체에도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를 개선하면서 비용을 축소시키는 동기를 유도한다. “이것이 공적부문의 효율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며, 외국의 例에서는 공적부문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공적부문이 경쟁의 승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5)”

상기와 같이 시장화테스트는 행정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官業(행정의 업무)과 행정부의 본질을 再考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공적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며, 행정이 담당하는 업무자체에 혁신과 창의(아이디어)를 창출한다. 더욱이 재정적인 부담을 극소화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층 더 나아가 서비스주체가 官(행정기관)에 의한 것인지 民(민간사업자)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社

5) 本間正明 (著), 市場化テスト研究会 (著), 概説 市場化テスト 官民競争時代の到来, NTT出版, 2005年, 第二章『市場化テストの実施プロセスと考え方』, 97면 참조.

會的 便益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하듯 시장화테스트의 장점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내면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원(세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면도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 아니 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전환한다’라는 視覺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공공서비스의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공공적인 사무와 공익의 추구는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실시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었으며,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다는 의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이 보다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맡긴다고 한다는 의식의 전환 그리고 사업의 성격과 효율적인 면에서 가장 적합한 수행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한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공공서비스개혁법 제정의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배경에 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부터 깊은 침체가 계속 되어 왔으며, 최근 2~3년간은 수출이나 기업의 설비 투자가 오름세를 타면서, 경기의 회복 기조에 있다. 그러나 각종 통계에 의하면, 2차세계대전 이후 경기회복이 계속 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의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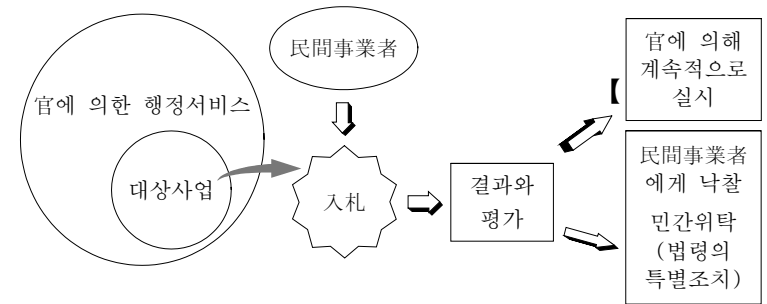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큰 역할을 한 현재까지의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행정부문이 철저히 효율화되며, 경비 삭감을 통해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6)’를 실현시키려는 취지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을 포함한 일본

6)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추진에 관한 법률(簡素で効率的な政府を実現するための行政改革の推進に関する法律, 2006年=平成18年 法律 第47号, ‘行政改革推進法’이라고도 한다.)이 제정되어, 2006년 4월 20일 중의원 통과, 동년 5월 26일 참의원 통과하여 법률 성립되었다. 그 내용은 공적부담이나 행정경비를 줄

전체에 있어서 긴급하며, 중요한 해결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⁷⁾는 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한편,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사회적인 성숙에 따라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망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망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Value For Money(VFM)’의 시점에서 투하한 자금(=세금)에 알맞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실시되도록 공공서비스의 제공의 본질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화테스트의 개념도



그리고 민영화 일반의 논의와도 상통하는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5가지의 방향성(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을 줄이려는 의도와 동시에 현재까지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축소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동법률에서는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었던 업무를 (1)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 (2) 지방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 (3) 민간에 위탁해야 할 업무, (4) 폐지되어야 할 업무 등으로 나누어서 국가공무원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사업분류”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7) 公共サービス改革推進室(홈페이지용 참조, <http://www5.cao.go.jp/koukyo/index.html>),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2006年, 1면 참조.

- (1) 경쟁 환경의 구축과 투명성의 확보
- (2) 고객주의의 확립
- (3) 최적인 수법(효율성)을 선택을 위한 환경정비
- (4) 새로운 관민의 역할의 구축
- (5) ‘새로운 공익’의 다원적인 제공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 사업의 민영화, PFI, 지정관리자제도 등의 각종의 제도가 도입 실시되어 각각, 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이나 경비의 삭감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상 분야가 한정적이며, 법률의 규제 등의 제약도 많은 이유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횡단적인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실시하기에는 불충분한 점도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官(행정기관)이 담당해 온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분야 橫斷(횡단)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증해 보며,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으로서 이미 많은 선진제국에서 도입⁸⁾되고 있는 ‘官民競争入札(시장화테스트)’를 일본에서도 활용해 보면 어떨지에 대한 소리가 높아 졌으며, 이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속에서 일본정부는 ‘官民競争入札 등(시장화테스트)’에 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民間にできることは民間に)’의 관점에서 민간의 창의와 연구가 살아나는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官民競争入札을 도입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화테스트법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정비에 착수하였으며,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로 官의 세계에 경쟁을

8) 전게서,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67 69면 참조.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단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즉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의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시각에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었다.

시장에 있어 競争環境의 경험이 적은 공적기관과 한편에서는 기존의 공적업무를 민간주체에게 위임하려는 체제에서는 단순히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 생각은 운용의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에 있어서 알기 쉬운 경쟁원칙이 官과 民이 일정한 틀 속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경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서비스개혁 법률로서 기능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은 이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법률은 물론이며, 그 법률 속에 내재해야 할 내용은 절차적인 측면 즉 무엇보다 ‘경쟁’이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도와 취지 자체가 모호한 것이 되기 쉬우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화테스트(官民競争入札)란 1970년대 이후, 구조적인 불황에 빠진 각국 정부가 도입한 新公共經營(New Public Management NPM⁹⁾)의 조류 속에서 창안한 행정개혁 手段의 하나이다.

9) 서구 선진국들은 1970년대 방만한 재정팽창을 실시한 결과, 스태그플레이션과 석유파동으로 인해 경제위기 등을 경험하며 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이론이 제기되고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흐름은 현대에 와서도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배분관리라는 화두를 놓고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삼자간 다각적 관계의 거버넌스(governance) 이념으로 발전하여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공관료제의 유전인자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국가발전이 기할 수 없다는 혁신적 행정개혁의 당위성 아래서 선진국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최근 한국의 행정은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진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객주의와 성과주의에 의거한 시민 우호적 전략의 도입이 우선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1970년대 중반 재정경제

그리고 특히 시장화테스트(官民競争入札)의 경우 일본에서는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의 민영화와 같이 친숙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선진국의 상황을 살펴보면¹⁰⁾, 특히, 미국¹¹⁾, 영국¹²⁾, 호주¹³⁾ 등에서 이미 실시되어 공공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 경비 삭감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시장화테스트의 실시에 의한 예산 삭감 효과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2년간에 실시한 결과 25억 달러라고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官民競争入札의 실시 후,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행정 코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13~15%의 경비 삭감 효과를 가져왔다.

2. 민영화의 비판적 측면

먼저 지금까지의 공기업이 공적소유 형태로 경영해 왔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행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공기업의 意義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것을 민영화론에서 주장하는 비판적인 고찰의 시점에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⁴⁾

(1) 해당 사업이 官業으로서 경영되고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民業의 경우보다 시행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2) 官業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경영에 관해 정보공개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참가를 고안하는 것이 용이하다. 즉 民業化

상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영국의 정부개혁, 특히 고객지향의 성과중심 행정 서비스를 창출한 시민현장제도가 모체가 되어 新公共經營(New Public Management NPM) 理論이 발전하여 오게 된 것이다. 용어로서는 ‘新公共行政’ 또는 ‘新公共管理’라고도 표현한다. NPM에 관한 공공성 관련(교육관련) 자료로서는 三橋良士明/榑原秀訓 編著, 行政民間化の公共性分析, 日本評論社, 2006年, 133 135면 참조.

10) 전개서,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67 69면 참조.
11) 전개서, 本間正明 (著), 143 162면 참조.
12) 전개서, 本間正明 (著), 163 174면 참조.
13) 호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개서, 本間正明 (著), 175 189면 참조.
14) 原野翹 (編集), 晴山一穂 (編集), 浜川清 (編集), 民営化と公共性の確保, 法律文化社, 2003年. 41 43면 참조.

에서는 기업비밀의 보호에 근거하여 그것을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3) 官業의 민영화는 기업논리 하에서 당해 사업을 포섭하는 것이 된다. 즉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의 안정적 계속적인 공급이 어디까지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다. 환언하면 不採算부분에서도 국민 생활에 있어 “삶의 권리”로서 불가결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 官業에 한정해서 설명 한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확보에 대한 일정한 법적통제가 존재하지만, 민영화 지향의 아래에서는 낮은 임금의 노동력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이 강화되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큰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5) 공기업이 행정의 일환이라고 한정한다면, 다른 행정부문과 통일적으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개별적 내지는 분야에 따른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공평하고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진다.

(6) 당해 사업이 公的所有 즉 행정주체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면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며, 사업에 관련되는 주민(국민)의 비밀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국민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7) 官業이 민간을 압박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官業의 존재가 민간자본의 熾포적인 利潤獲得 活動을 규제하는 점에서 과약할 필요가 있다. 소위 “自然獨占”적 성격을 가지는 官業의 민영화는 민간자본에 독점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예전의 염업(鹽業)과 현재의 담배와 같은 전매사업의 민영화 문제와 금융업의 일부인 (일본)簡易保險, 郵便貯蓄 업무의 폐지 등에서도 고려되는 것이다.

(8) 官業의 적자와 무모한 제도화라는 비판적인 측면에서 적자와 무모한 官業의 공적소유 형태,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문제인지 면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민간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民間性善說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고 있다.

(9) 勞動基本權과의 관계에서 민영화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勞動基本權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문제는 헌법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한 차원 상위의 논의로 생각한다.

3. 종전민영화 수단과 상이점

행정서비스의 민간개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근까지 제도화 되어 온 PFI, 공공시설의 지정관리자제도, 구조개혁특구(經濟特區)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화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어 왔다.

(1) PFI(민간자금활용)제도

구체적으로는 먼저, PFI(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제도15)에 있어서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주체를 ‘관리자’로 정하고 소위 ‘公物管理法16)’에 근거하여 도로, 하천, 공항, 항만, 도시공원, 하수도 등에 관해 PFI법에서 정하는 선정사업자의 경우에도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중에서도 운영할 수 없는 사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국가(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PFI 선정사업자의 선정수속(절차) 및 선정기준이 PFI법의 취지인 민간의 창의 아이디어가 발휘되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는 것

15) 規制改革 民間開放推進會議, 規制改革 民間開放の推進に関する第2次答申『小さくて効率的な政府』の実現に向けて 官民を通じた競争と消費者 利用者による選択, 2005年=平成17年 12月 21日. 7면 참조.

16) 일반적으로 공물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체 등이 소유하는 공물^㉒의 관리에 관해서 정하는 법률이다. 공물관리법은 공물의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까에 대한 관리주체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체로 한정하는 유형, 관리자를 원칙으로서 지방자치체로 한정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설치관리를 인정하는 유형, 관리자를 민간 지방자치체 등의 구별에 관계없이 인정하는 유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PFIインフラ整備の課題() 公物管理法, 『PHP 政策研究レポート』(Vol.6 No.75) 2003年 9月, 27면 참조.

에 반드시 일치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 지정관리자 제도

그리고 公의 시설(공공시설)의 지정관리자 제도17)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시설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공물관리법 등과의 법적 정비가 실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공공단체의 공공의 시설에 있어서 관리 운영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②

【 민영화의 다른 유형과 관민경쟁입찰(시장화테스트법)18) 】

항 목	관민경쟁입찰	PFI제도	구조개혁특구제도	지정관리자제도
근거법	시장화테스트법	PFI법	특구법	지방자치법
대 상	공공서비스 (행정처분도 포함)	공익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규제대상 분야	‘公의 시설’의 관리(행정처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
민 간 사 업 자 와 의 관 계	민법상의 계약과 본 법률에 의해서 실시	민법상의 계약	민간사업자의 경우, 민법상의 계약이며, 특구법에 의해 계약이 존재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指定’에 의해서 관리 권한이 위임
임 무 수 행 결 정 방 법	입찰에 의한 결정 (官도 참가)	입찰에 의한 결정	특구계획의 인정에 의해 결정	指定에 의해 결정

(3) 구조개혁특구 제도

또한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는 당분간 어디까지나 지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조치에 불과하며, 민간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특구계획안의 작성에

17) 전계자료, 規制改革 民間開放推進會議, 規制改革 民間開放の推進に関する第2次答申, 7면 참조.

18) 전계서,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15면 참조.

있어서의 제안은 가능하나, 인정신청은 지방공공단체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⁹⁾

(4) 상이점의 도출

이러하듯 ‘현재까지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서비스가 대상이 되어 있지 못한 점과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한 규제완화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화 테스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위치에 있다²⁰⁾’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4. 公共 “서비스” 개념의 확대와 명확성

중전의 행정주체에 의해서 행해져 오던 공공서비스가 민간에게 위탁되는 경우 공공을 위한 서비스라는 개념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국민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념을 둘러싸고 논의될 만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하기로 한다. 그 후 이러한 서비스개념의 확대로 인해 향후 대처해야 하는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먼저, 공공서비스의 개념정리를 하자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시민사회서비스”, 행정기관 이외에 의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민간위탁과 같은 공무원 이외의者に 의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로 나누며,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직영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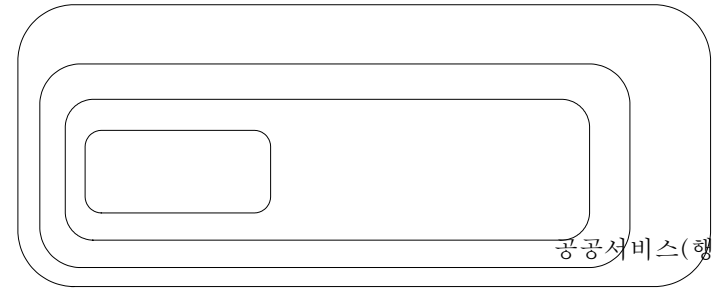
19) 진계자료, 規制改革 民間開放推進會議, 規制改革 民間開放の推進に関する第2次答申, 8면 참조.

20) 榊原秀訓(著), 尾林芳匡(著), Q&A市場化テスト法 仕組みと論点, 自治体研究 ③, 2006년, 7면 참조.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경기정체 등 이러한 원인에서부터 과급된 세금의 감소, 재정위기의 흐름 속에서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민간으로”라는 新保守主義인 사고가 대세를 이루는 형세를 띄고 있다.²¹⁾

그러나 다른 한편 국민의 공공서비스에서의 필요성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의도 존재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규제는 철폐되더라도 사회적 규제는 종전보다 더욱 엄격한 형태로 지속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公共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



이러한 변화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행정직영서비스로 범주화되고, 이 이외의 者에 의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민간위탁서비스(공무원에 의한 것)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일본사회가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高齢者에 대한 介護²²⁾와 保育과 같이 예전에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책임지어 온 공공서비스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확대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의해서 실시 가능한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1) 武藤博己, 入札改革(新書), 岩波書店, 2003년, 88, 89면 참조.

22) 일본에서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수발을 “介護”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서 운용해야만 한다는 종래의 법의식 아래에서는 공공성 확보라는 담보가 확고히 존재하지 못한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확보에 관한 위의 이유에서 上記의 “행정서비스”의 개념은 上記의 “공공서비스”의 개념에 포섭되며, 공공서비스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³⁾

특히 시장화테스트법²⁴⁾ 제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定義에 관한 획기적인 의미로는 官民競争入札, 民間競争入札의 구조로 인해 不斷의 개혁을 행하는 事務 내지는 事務의 單位로서 “공공서비스”라는 法概念을 도입하고 있다.

즉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에 관한 국가 정부주변법인 지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官民競争入札 民間競争入札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선정하는 행정절차를 정비한다는 점이다.²⁴⁾

이러한 점은 향후 법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책임론²⁵⁾ 등을 둘러싸고 많은 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만약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시장화테스트법제를 도입할 경우 많은 검토 요소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절을 바꾸어 공공서비스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분석한다.

23) 전게서, 武藤博己, 89면 “圖表 6”을 참조.

24) 橋本博之,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案について, 自治研究 第82卷 第6号, 2006.6. 37-38면 참조.

25) 국가배상법상 위탁한 사업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더욱 가시화 되리라는 추측을 한다. 이러한 국가배상문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행해졌는가, 아니면 私人(민간사업자)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해졌는가에 따라 관단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행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戸部真澄, 特別区による家事援助者派遣事業の仕組みと国家賠償責任(平成11.3.16東京地裁判決), 自治研究, 77(8)(通号 930), 第一法規, 2001年, 141면 참조. 관련해서 塩野宏, 行政法 2 行政救済法, 有斐閣, 2005年, 260면 이하 참조.

제 2 절 공공서비스개혁 전제조건

일반적으로 공적주체와 민간주체가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상대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리고 경쟁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듯 관민경쟁을 실시할 때에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 대상의 일정업무가 官業(행정의 업무)으로서 독점이 된 경우, 공적주체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며, 공적주체라는 것만으로도 경쟁상 우위성을 가진다. 본래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할 경쟁주체의 어느 한 쪽이 경쟁을 하기 전부터 우위의 입장을 점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쟁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다.

만약 경쟁의 한쪽 당사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되면, 무의미한 경쟁해야 하며, 경쟁자체가 가치가 없어지고 만다. 이것은 경쟁참가의 의미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쟁에 참가하는 주체는 상호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관민경쟁의 실시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5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즉 1. 공적주체에 의한 비용의 정확한 확보, 2. 경쟁조건의 균일화, 3. 정보의 비대칭성의 배제, 4. 시장을 歪曲하는 공적분야의 권력성과 자의성 배제, 5. 공평 중립적인 입찰의 체제 절차와 중립적 주체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1. 공적주체에 의한 비용의 정확한 확보

일반적으로 일정한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경우, 비용에 대한 운용은 發生主義, 企業會計原則에 기초하여 정확하

게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확보한다. 그 전제가 되며 필수요건인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추정하여, 이것에 이익을 추산하여 서비스의 대가를 결정한다. 경쟁시장에 있어서 서비스대가의 제안은 전체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通例이다.

이것과는 반대로 경쟁상대인 공적기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공적인 회계는 單年度現金主義를 취지로 하며, 발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費用計上인 것도 아니며, 減價償却도 아니며, 기간손익을 파악하는 운용도 아니다.²⁶⁾” 공무원에 의한 운용의 경우가 그러하며,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및 지방공영기업은 독자의 회계로 운용하며, 민간기업과 같이 發生主義會計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 수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경쟁 환경에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행정주체는 예산관리와 직접비용에 있어서는 완벽하지만, 개별업무와 서비스 내용마다 필요한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전체비용을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直接費는 확실히 확보 가능하지만,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는 의식하면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는다.²⁷⁾”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대등한 경쟁을 고려할 경우,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의 행정비용이 민간기업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행정비용의 파악이 건전한 경쟁순서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의 판단으로서 행정전체비용(Toll Cost)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장화테스트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26) 전게서, 本間正明 (著), 61면 참조.

27) 전게서, 本間正明 (著), 61면 참조.

행정전체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평한 형태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官民競爭入札의 원칙에 관해서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발생주의 회계로 운용하며, 민간주체와 같은 수법과 思考에 의해 행정비용을 정확하게 확보하여, 비교대상의 기초를 마련한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① 위해 총비용을 파악하는 경우, 活動基準原價計算(Activity Based Costing: ABC)을 채택하여 합리적인 간접비를 부가한다.

②

官에서 民으로 사업이전이 가능하다는 경우를 상정하여, 경쟁의 결과로서 행정에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의 비용을 조정한다.

2. 경쟁조건의 均質化

만약 경쟁을 함에 있어 처음부터 장애가 있으면, “公平”한 경쟁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쟁에 있어 공평성을 확보하며, 官民사이의 경쟁조건을 均일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산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간 부문에서는 자신이 취득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資産課稅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공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공적부문만이 은혜를 받는 稅와 補助金, 交付金 등이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숨은 財政負擔의 경감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²⁸⁾

민간부문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에 수반되는 “제3자 손해배상 리스크” 등을 補填하기 위해 보험에 의존하며, 그 비용을 코스트(cost)화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편 공적부문에서는 통상의 관행이 없으며, 리스크가 코스트(cost)화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8) 전게서, 本間正明 (著), 61 63면 참조.

이러하듯 官과 民과의 서비스의 본질을 비교할 경우, 稅效果를 중립화하거나, 리스크를 비용화하거나 현재 공적주체가 가지는 업무에 대해 리스크의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리스크를 이전함에 따라 효과 등이 평가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그리고 전제조건으로서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官과 民을 비교할 경우, 評價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경쟁조건을 균일화하는 것과 미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적부문과 업무를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官과 民의 경쟁조건을 균일화하는 배려가 없으면 공평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정보의 非對稱性의 배제

현재 경쟁대상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공적인 주체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정보를 담당하는 공적주체가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시장에 있어서 공유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民間企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실제의 업무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²⁹⁾

공적주체가 의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실체를 은폐하거나 대상이 되는 업무의 특성을 逆으로 복잡화하거나 民間企業이 應札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입찰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의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민간주체는 경쟁의 대상을 파악하고 어떠한 곳에 창의와 아이디어의 여지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다면, 民間主體의 참가의욕을 저하시키며, 결과적으로 공적

29) 전게서, 本間正明 (著), 63면 참조.

주체가 경쟁상 우의를 점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공적주체가 의식적이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정보의 非對稱性이 존재하는 한 공정한 경쟁적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 이러한 불리한 관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중립적인 제3자가 정보공개の本질과 내용에 관해서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³⁰⁾”

4. 시장을 歪曲하는 공적분야의 권력성과 자의성 배제

公的機關과 民間企業이 경쟁에 의해서 만약 民間企業이 낙찰한 경우, 당해 입찰행위와 업무수행 이외의 측면에서 공적기관에 의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 염려하는 民間企業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관련되는 행정부가 다양한 許 認可權과 발주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업무와 서비스제공에 관해 官民競争入札에 있어 민간주체가 낙찰된다면, 당해 업무 이외의 부분에서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하겠다.³¹⁾

위와 같은 불리한 처우는 정보공개와 절차의 투명성만 확보되면 본래에 염려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 것이다. 경쟁에 참가하는 민간주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즉 절차 등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그리고 제3자에 의한 공정한 감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³²⁾

30) 전게서, 本間正明 (著), 64면 참조.

31) 전게서, 本間正明 (著), 64면 참조.

32) 전게서, 本間正明 (著), 65면 참조.

5. 공평 중립적인 입찰의 체제 절차와 중립적 주체에 의한 평가

競争入札의 모든 과정에서 절차의 측면과 평가의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第三者機關에 의한 입찰행위의 프로세스의 관리, 감시가 필요하다. 시장화테스트의 전제 조건으로서 행정부 내부의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여 행정부로부터 중립적인 第三者機關을 설립하여, 투명성과 공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국에 있어서의 強制競争入札³³⁾(CCT: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을 도입한 경우를 보면, 어떠한 사업이 시장화테스트의 대상이 된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공적부문의 현업부문을 DSO/DLO(Direct Service Organization, Direct Labor Organization: 직접서비스제공조직/직접노무제공조직)와 같은 기존의 행정부내에서 분리하는 제도이다. “예산, 인사를 포함해서 조직적으로 공적부내에서 독립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이다. 더욱이 공적기관이 현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기업과 경쟁을 하도록 의무화하며, 경쟁에서의 승자만이 서비스제공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³⁴⁾”

33)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릴 것 없이 公共部門의 혁신이 진행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Achieving Excellence Program을 통한 투자 효율성(VFM) 획득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強制競争入札(CCT) 즉 최고가치(Best Value)를 금전적인 것에 두었다. 즉 영국에서 ‘최고가치(Best Value)’의 기본개념은 “납세자가 수용할만한 가격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조달정책 그 자체는 아니고, 서비스 제공의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던 보수당 정부의 強制競争入札(CCT)제도를 폐기하는 대신 2000년 4월부터 최고가치(Best Value) 적용 의무화를 2000년에 들면서 중앙정부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34) 영국의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1980, Part 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전게서, 本間正明 (著), 66면 참조하기 바람.

이는 초창기의 형태로 경쟁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한 시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먼저, 시사점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공개입찰이기는 하지만 공익성 담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테스트가 공정성, 투명성의 견지에서는 물론 第三者機關에 의해 확보하려는 측면은 평가할 만하다.³⁵⁾

제 3 절 공공서비스개혁 기본원칙

민간경쟁입찰을 도입하여 경제의 활성화와 공익의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화테스트 도입에 있어 효율적이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1. 경쟁환경의 구축과 투명성 중립성 공공성의 확보, 2. 고객주의의 확립, 3. 최적의 수법선택을 위한 환경정비, 4. 국민의 역할의 구축, 5. 새로운 공익의 다원적인 제공의 구축이 필요하다.

1. 경쟁환경의 구축과 투명성 중립성 공공성의 확보

현재까지의 공공서비스는 제공형태와 사업자의 선택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충분한 평가를 이루지 못했다. 만약, 어떠한 평가가 행정내부에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가의 결과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설명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쟁시장 하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결정하게 하는 경쟁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과 중립성 공평성이 확보될 것이 요구된다.³⁶⁾

35) 자세한 내용은 전게서, 本間正明 (著), 68, 69면 참조.

36) 전게서, 本間正明 (著), 111면 참조.

이러한 경쟁환경의 정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의 주체를 선별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고객주의의 확립

고객주의를 확립하고 고객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豫算”보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質 量”, 더욱이 “고객의 만족도”에 의한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적인 목적인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서비스의 평가에 반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종래의 상하계층적인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형태를 “계약에 의한 정부³⁷⁾”로 변혁시켜 나가는 것에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VFM(Value For Money = 金錢的 價値) 등의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의 양면을 구비한 가치판단기준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⁸⁾

3. 최적의 수단선택을 위한 환경정비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Best VFM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비교 검토한 후에 가장 필요하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섹터의 직영에 의한 제도설계를 개선하여,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 민간에 위임 한다”라는 시각에서 官과 民이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며, 필요한 규칙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一律的이며, 硬直的인 규칙이 아니라

37) 정부계약의 일반적 이론에 대해서는 W. Noel Keyes, Government Contracts In A Nutshell, West Group, 2004.를 참조 바람. 논문으로는 Jody Freeman, THE PRIVATE ROLE IN PUBLIC GOVERNANCE,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5 N.Y.U.L. Rev. 543, June, 2000.이 유익하다. 위의 논문 625면 이하의 정부의 기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만을 참조.

38) 전게서, 本間正明 (著), 111면 참조.

공공서비스의 屬性에 따라서 다양한 수법의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수단을 고정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영국의 “Best Value”제도와 같은 업적지표의 설정, 공공서비스의 실시결과에 평가, 업무의 개선이라는 PDCA(Plan, Do, Check, Action)의 “관리사이클(Management Cycle)”의 기능이 가능한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³⁹⁾

따라서 “시장화테스트” 도입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사전평가 함에 있어서 행정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4. 관민의 역할의 구축

지금까지의 공공서비스에 있어 공공성의 담보라는 것은 公物管理의 사고에 근거하여 공공섹터가 소유할 것이 전제되었으며, 공공섹터가 직접시설의 정비 관리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Best VFM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행정섹터의 ‘直營’ 중심의 사고에서 변화하여 공공섹터 내의 기능분리와 함께 민간의 ‘經營手段(手法)’과 ‘管理概念’을 도입할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⁴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공공섹터를 정책부문과 실시부문으로 분리하여 政策部門에서는 공공서비스에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 Rule Making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實施部門에 있어서는 유니버설(Universal)서비스 등의 필요성을 念頭에 두고 공공서비스의 직영제공이 불가결한 분야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부문의 모니터링을 전제로 實施部門의 조직 및 업무의 필요성을 충분히 吟味할 필요가 있다.⁴¹⁾

39) 전게서, 本間正明 (著), 제3장 부분의 112면 참조.

40) 經濟産業省 經濟産業研究所, 『日本版PPP研究会』, 日本版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公共サービスの民間開放)の實現に向けて 市場メカニズムを活用した經濟再生を目指して (中間とりまとめ), 2002年=平成14年 5月 22日. 11면 참조.

41) 전게서, 本間正明 (著), 112면 참조.

더욱이 공공섹터에서는 민영화의 가능성, 민간위탁과 민간사업자의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민간자금과 민간의 노하우, 리스크관리 능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 요구된다.⁴²⁾

5. 새로운 공익의 다원적인 구축

현대사회의 가치관이 다양화된 속에서는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해 판단을 하여, 공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⁴³⁾ 따라서 행정이 일원적으로 공익을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업, NPO, 社會的起業者와 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기초로 多元的인 공익을 企劃 立案 실시하는 시대에 도래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커뮤니티(Community)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NPO와 社會的起業者의 활약이 향후 기대된다.

그리고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⁴⁴⁾에 있어 公評性 中立性 專門性을 이유로 행정에 의한 一律的인 정책입안 실시를 개선하여 행정 기업 NPO와 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공익”의 多元的인 제공을 할 수 있는 思考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섹터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민영화(아웃소싱)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⁴⁵⁾

다른 한편으로 종래의 행정이 담당한 공익을 민간기업과 NPO가 제공하는 경우 행정, 수익자, 기부자 등의 민간기업과 NPO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42) 전게서, 本間正明 (著), 112면 참조.

43) 전게서, 本間正明 (著), 113면 참조.

44) 민관협력체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등장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 등장하였다. 즉 1980년대까지 정부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영국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투입감축과 산출증대를 중시하는 효율적 효과적 성과지향의 정부개혁은 1980년대 이래 중요한 국정 운영목표가 되었다. 신공공관리(NPM)는 이러한 성과 지향적인 정부 구원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게서, 宮脇淳, PPPが地域を 変える, 194 225면 참조. 그리고 전게보고서, 經濟産業省 經濟産業研究所, 『日本版PPP研究会』를 참고.

45) 전게서, 野田由美子, 29, 30면을 참조하기 바람.

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 조직의 의사결정에 관한 관리, 공정하면서 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요구된다.

【경제사회의 다원화된 새로운 공익】



“새로운 공익⁴⁶⁾”의 책임자인 민간기업과 NPO 社會的起業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며, 정보공개와 사업성과평가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시장화테스트”를 도입함에 있어 NPO 社會的起業者의 취급에 있어서는 非營利性을 전제하면, 시장에서의 가격평가가 어려워지며, 서비스의 質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실례로서 일본의 경우 그 예로 群馬縣太田市(군마켄오타시)의 図書館運營事業、福岡市(후쿠오카시)의 리사이클프라자(リサイクルプラザ)運營事業、北九州市(기타큐슈시)의 動物園運營事業 등이 NPO에 위탁된 사례가 대표적이다.⁴⁷⁾

유사한 법적인 장치로서 일본에서는 指定管理者制度의 도입으로 인해 이미 NPO 등에 대해 경쟁입찰에 의한 사례가 지방공공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는 地方自治法の 일부 개정에 따라 2003년=平成15年 6월에 公布되어, 同年 9월부터 施行됨에 따라서, 地方自治体の 公共施設에 있어서도 종래의 管理委託制度에서 指定管理者制度가 適用되기에 이르렀다.⁴⁸⁾

46) 전게보고서, 經濟産業省 經濟産業研究所, 『日本版PPP研究会』, 새로운 공익(다원적인 제공)이라는 부분을 정리한 것임. 11, 12면 참조.

47) 전게서, 本間正明 (著), 114면 참조.

48) 2003년 개정된 日本 地方自治法 제244조, 제244조의 2에서 指定管理者制度를 도

이른바 공공사업의 수행자가 ‘官(행정)에서 民(민간)으로’라는 의식 전환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행정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의 임무를 위탁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수긍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시장화테스트법)에서 강조되는 기본적인 생각과 실시하려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즉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은 공공서비스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부당한 재검토를 실시하며 민간사업자의 창의를 적절히 반영시킴으로 인해 국민을 위해 보다 양질이고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서 실시한다.”⁴⁹⁾

그리고 항상 재검토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중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있다.

【 시장화테스트법의 思考 】

-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는 관점
- 관민경쟁입찰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실시를 확보한다는 관점
- 낙찰한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창의를 효과적으로 업무에 반영한다는 관점

입하고 있다. 제244조의 2 제2항에서 “보통지방공공단체는 公의 시설의 설치의 목적을 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에 의해 법인 그 외의 단체로서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公의 시설의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指定管理者制度를 두고 있다.

49) 内閣府 公共サービス改革推進室, 公共サービス改革基本方針, 2006年=平成18年 9月 5日 閣議決定, 1면 참조.

제 4 절 공공서비스개혁의 종류와 범위

1. 공공서비스개혁의 종류

시장화테스트법에서의 “공공서비스”란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非特定公共서비스와 국가의 행정기관 등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特定公共서비스의 2종류이다(제2조 제4항).

非特定公共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그 이외의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업무이며, 단, 행정행위는 제외된다. 그 내용과 성질상 “반드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없는 업무(제2조 제4항 제1호 마=第2条 4項 ホ)” 전반이 포함되는 것 이외에 특히, 施設の設置運用管理, 研修, 相談, 調査 研究의 4종류이다.

그리고 特定公共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의 업무가 특별로 적용되며, 公共職業에 있어 人才銀行事務(관리직과 전문 기술직의 직업소개 서비스)와 캐리어교류프라자사업(관리직 경험^①과 기술자에 대한 직업지원 업무) 등이^④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사업, 호적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住民票 複寫, 戶籍附票⁵⁰⁾의 複寫, 인감등록증명서의 교부 청구의 접수와 引渡의 업무이다.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본 법에서 적용되는 업무는 ^①에 한정된다.

그리고 본 법에서 경쟁 도입에 의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에서도 명확한 것은 행정처분 권한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②며, 제2조 제4항 제1호의 特定公共서비스에 있어서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공중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증명

50) 호적이 작성되고 나서는 주소의 변경이 실려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소의 변동 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며, 주민표의 제표가 보존 연한을 지나 버렸을 경우에는, 호적의 부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창구에서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면허증 보험증 등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서 등의 교부 청구의 접수 및引渡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증명행위 그 자체는 지방공공단체에 유보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⁵¹⁾

물론 여기에서의 “行政處分”은 당연히 “公權力의 行使”에 해당할 것이나, 행정주체 이외의 개인과 법인에 청부계약 등의 民法的인 手段에 의해 위임되는 소위, “위탁의 제도는 외부에 대한 公權力의 行使는 적합하지 못하다⁵²⁾”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본 법에서의 계약⁵³⁾에 의한 위탁제도는 행정처분권한을 위임하는 民間指定檢査機關制度和 指定管理者制度의 “委任行政”과는 확연히 다른 구분이 된다.⁵⁴⁾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는 후술한다.

그리고 PFI, 經濟特區, 指定管理者制度, 아웃소싱(외부위탁)의 활성화 등은 과거에도 존재하는 手段이었다. 이러한 민간개방의 방법은 국가에 따라서는 다른 상이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화테스트와 유사한 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한 시도는 다양한 것이었다.

단지, 기존의 PFI, 經濟特區, 指定管理者制度, 아웃소싱(외부위탁) 등에 의한 수단과 운영을 위한 思考로는 민간사업자의 創意的인 아이디어 또는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구조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⁵⁵⁾

시장화테스트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흥미가 있고 새로운 것은 민간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51) 人見剛, 市場化テスト法案分析 行政法学の観点からの検証, 特集[社会化テスト]のすすめ, 月刊自治研 四月号, 2006年. 31면 참조.

52) 塩野宏, 行政法 (第二版), 有斐閣, 2001年. 97면 참조.

53) 본 법의 제20조 이하의 계약에 관한 조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히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서의 계약의 형태를 말한다.

54) 전개논문, 人見剛, 31면 참조.

55) 전개서, 本間正明 (著), 95면 참조.

즉 정부(官)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민간기업(民)이 적극적이며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구조야 말로 민간의 創造的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시장의 비즈니스가 생성되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분은 家計와 企業과 함께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큰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公的部門이 스스로 담당하는 업무를 민간주체에 개방하는 것은 그 경제효과가 지극히 크며, 官과 民 사이에서 公益的인 性格을 가지므로 이러한 “공적(담당)비즈니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⁵⁶⁾ 즉 시장화테스트에 의해 민간주체에 의한 官製市場 개방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민간개방의 일환으로 6유형의 812개의 사업에 대해 모델 사업에 있어 官業을 민간 개방하는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⁵⁷⁾

【개별관업의 민간개방 추진】

①	給付·徴収業務	國·地方稅의 徴收 等
②	公的施設의 整備, 管理, 運營	宿泊, 廳舍·宿舍, 情報通信시스템, 行刑施設 等
③	登録業務	車庫證明, 登録 登記, 公證 等
④	統計調査, 製造	各種의 統計
⑤	調査, 檢査 業務 等	宅地免許審査 等
⑥	그 以外の 事務	物損事件處理, 競賣節次, 職業紹介, 航空管制 等

56) 전개서, 本間正明 (著), 94면 참조.

57) 規制改革 民間開放推進會議의 자료 참조. 中間とりまとめ(案), 『官製市場の民間開放による『民主導の經濟社会の実現』』, 2004年 8月 3日. 17-26면의 내용을 정리.

주지하는바 개별관업의 민간개방 추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사업에 걸쳐 公共事業이 民間企業에 의해 실시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분야별로 성질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나누어 살펴보면 이하와 같은 업무를 예상하고 있다⁵⁸⁾.

신규시설정비

병원, 학교정비

① 1. 養老所, 介護(개호=수발)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형무소, 사회更正(=矯正)시설

도로, 항만, 상하수도

시설의 운용, 갱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상하수도사업, 항만

하천, 도로 등의 관리

② 시설정비를 동반하지 않는 공공서비스 사업

각종위 신청, 등록의 수리 교부 등의 카운터업무

공원 등의 관리업무

사회보험 등 徵收業務 및 서비스업무

③ 주차위반 단속

긴급통보전화의 受理

행정업무의 지원업무

컴퓨터 등의 보수 운용업무

防衛關聯後方支援서비스業務(整備, 研修 等)

廳舍管理 業務

職員研修

消耗品 등의 調達業務

④

58) 전게서, 本間正明 (著), 114, 115면 참조.

2. 공공서비스개혁의 범위

(1) 공공서비스

시장화테스트법에 있어서 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관민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업무 가운데 반드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 및 ‘특정공공서비스’를 말한다.

(2) 행정처분

이 법률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 대해 법령상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업무에 있어서도 본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정공공서비스’에서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관민경쟁입찰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특정공공서비스

‘특정공공서비스’란, 관민경쟁입찰등의 결과,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률의 특례(참가자격, 감독상의 조치, 규제 완화 등)가 적용되는 업무를 의미한다.⁵⁹⁾

예를 들면, 어느 공공서비스의 담당자가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있을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시장화테스트법에 해당 법률의 특례(민간사업자도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를 마련함으로써 관민경쟁입찰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59) 직업안정법의 특례(법 제32조), 국민연금법등의 특례(법 제33조), 호적법등의 특례(법 제34조)가 해당한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후술한다.

제 3 장 시장화테스트법의 분석

제 1 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제정목적

1. 제정의 배경

상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의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시각에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었다. 종래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만 실시 되어온 공공의 사업(공공의 서비스 분야)을 민간기업과 경쟁입찰을 통해 당해 사업을 위임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민간경쟁입찰”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시할 예정에서 정비하였다.

2. 제정의 취지

이 법의 취지와 기본이념은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의 책정, 官民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 낙찰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官民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설치를 필요사항으로 하고 있다.

(1) 시장화테스트법의 취지

이 법률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그 실시를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려는 관점에서 이것을 재검토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고안(아이디어)이 반영될 것이 기대되는 一體의 업무를 선정하여 官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에 불임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 및 경비의 삭감을 도모하는 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기본이념,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책정, 官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의 수속(절차), 낙찰된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官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설치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⁶⁰⁾

(2) 시장화테스트법의 기본이념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전체 안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에 대해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실시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아래에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고안(아이디어)을 적절히 반영시키며, 국민을 위한 보다 良質이고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서 실시하는 것이다.

위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재검토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가운데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한다.⁶¹⁾

제 2 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주요내용

1.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과 특례

(1)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과 실시방침

내각총리대신은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며, 민간사업자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해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계획하며,

60) 법 제1조 참조.

61) 법 제3조 기본이념 조문을 참조.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려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실시 가능한 환경정비를 위해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해 계획하며, 官民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을 선정하여 그 내용 및 조치를 강구하며, 사업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를 강구하여 “기본방침”을 작성한 후 정부행정기관의 長과 협의를 거친 ㉔, “官民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閣議決定로 決定한다.62)

지방공공단체에서의 官民경쟁입찰 등의 실시방침은 단체장이 官民경쟁입찰에 관해 그 대상을 선정하고 특정의 공공서비스의 내용에 관해서 “實施方針”을 작성한다.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官民경쟁프로세스(절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官民경쟁입찰 및 民間경쟁입찰 등

1) 官民경쟁입찰의 참가

官民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는 공공서비스 質의 유지향상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대상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입찰금액을 기입한 서류를 정부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신청을 한다.63)

官民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者들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은 대상 서비스의 質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대상

62) 법 제7조 제1항 참조.

63) 법 제11조 제1항에서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는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에 따라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 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該當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항에 대해 같다.]을 포함한다. 이하는 동일하다.)를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실시한다.” 즉 1.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質의 유지향상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시 체계 및 실시 방법. 2. 입찰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한다.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요구되는 경비의 금액을 기입한 서류를 작성하다.

2) 입찰자의 결정

국가행정기관의 長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들의 서류를 평가하여 “官民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삭감과 서비스 質의 유지향상에 가장 유리한 者를 선택하여 당해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者로 결정한다.64)

(3) 민간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의 공공서비스의 실시 내용

1) 계약형태

민간사업자를 낙찰자로서 결정했을 경우에는 官民競争入札 실시요항 또는 民間競争入札 실시요항 및 신청의 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해 官民競争入札 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民間競争入札 대상 공공서비스(이하 ‘대상 공공서비스’라고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한다.65) 그리고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의 이름 또는 명칭 및 해당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 政습으로 정해야 할 것을 공표하여야 한다.66)

정부의 행정기관의 장은 낙찰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 실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변

64) 법 제12조 참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前條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전부에 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관민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65) 법 제20조 제1항 참조.

66) 법 제20조 제2항 참조.

경67)과 계약의 해제68)도 가능하다.

2) 감 독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의 상황에 관계되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검사를 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69)

즉 행정기관의 長은 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3) 공공서비스의 실시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제21조 제1항의 계약에 따라서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70) 민간사업자는 상기의 계약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수비의무규정 및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71)

67)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 및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대상 공공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제20조 제1항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21조 참조를 참조.

68) 법 제22조 참조.

69) 감독에 관한 내용은 법 제26조를 참조하기 바람.

70) 법 제24조 참조.

71) 법 제25조 참조.

(4) 법령의 특례

1) 통칙에 관해서

官민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는 재정법의 특례,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등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실시를 민간사업자가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참가자격, 감독상의 조치, 규제의 완화 등)에 대해서 ‘법령의 특례’로서 시장화테스트법 제2조 제9항에 있어서 정의규정과 구체적인 ‘법령의 특례’에 관해서는 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의 특례(법 제32조), 국민연금법등의 특례(법 제33조), 호적법등의 특례(법 제34조)가 설치되어 있다.

종래부터 행정기관은 청사의 청소 경비나 공용차의 운전 등 그 사무의 보조에 있어 부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등에 업무위탁을 실시해 왔다.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이와 같이 종래부터 실시되어 온 ‘업무위탁’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그러한 것이 기대되는 일체의 업무를 선정하여 관민경쟁입찰등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라는 구조개혁을 ‘聖域없이’ 실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년 재검토를 실시하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따라 새롭게 관민경쟁입찰등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에 응하여 시장화테스트법의 규정에서 법령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공공서비스의 담당자가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해당 법률의 특례를 마련하므로 인

해 민간사업자도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관민경쟁입찰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 재정법의 특례

재정법 제15조 제3항⁷²⁾에 있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國庫債務負擔行爲의 年限을 10년 이내로 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 年限의 범위 내에서 실시요항에 적절한 실시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더욱이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채무부담행위의 年限은 법률상의 연한은 정하지 않고 예산의 내용 내에서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다.

3) 특정공공서비스

직업안정법의 특례: 민간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사업의 취급범위를 제한하는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의 특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청구의무에 관해서는 변호사^{㉑)}외의 者도 실시할 수 있다는 조치와 그 실시에 있어서 행위 규정 등을 적용한다.

호적법 등의 특례: 호적법에 기인한 호적등본의교부의 청구 및引渡(인^{㉒)})의 업무를 민간업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72) 일본 “재정법” 제3장 예산부분의 해당 조항이다. 제15조 법률에 따르는 것 또는 세출 예산의 금액(제43조의 3에서 규정하는 승인금액을 포함한다. 혹은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이외,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예산에 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 재해복구 그 이외 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는 매회계년도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인해 지출해야 할 年限은 해당 회계년도 이후 5개연도 이내로 한다. 단, 국회의 의결에 의해 더욱 그 年限을 연장하는 것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및 공제연금, 지방공공단체의 채무^{㉓)}보증 또는 채무의 元利 혹은 이자의 보급, 토지, 건물의 임대료 및 국제조약에 따르는 분담금에 관한 것, 그 이외 법률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

내각부에 “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를 설치⁷³⁾하며, 官民競爭入札의 공정한 실시의 감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官民競爭入札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에는 조례로 官民競爭入札등의 공정한 실시의 감리를 행하기 위한 심의회와 그 이외 합의제의 기관을 두도록 한다.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먼저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 입찰에 의한 업무에 관해 담당하는 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1) 설치목적 및 권능, 그리고 2) 위원회의 조직구성, 3) 위원회의 조치에 관해서 검토한다.

1) 설치목적 및 권능

시장화테스트법에 있어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실시과정은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로서 관여하는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내각부설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⁷⁴⁾하는 심의회 등에 해당하며, 내각부에 설치하고 있다. 감리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에 근거로 하여 이하의 권능을 가진다.

관민경쟁입찰 혹은 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규정하여 閣議決定하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심의

관민경쟁입찰등의 대상 공공서비스 마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결정하는 실시요항의 심의

73) 법 제37조~제47조 참조하기 바람^{㉑)}

74) 내각부설치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 또는 정령에 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조사 심의, 불복 심사 그 외 확실히 경험 가진 者등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주관하게 하기 위한 합의제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

관민경쟁입찰의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되는 평가의 심의

③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와의 사
이에서 계약의 변경, 해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할 때의 심의

④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
보고의 징수, 지시등의 조치를 강구했을 때는 감리위원회에 통지

⑤ 이러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내각총리대신 또는 내각총리대신
을 통해서 관계하는 행정기관 등의 長에 대해 필요한 권고

그리고 ⑥ 이러한 소장사무의 수행을 실효 있게 하기 위해 필요에 따
라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공공서비스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위원회의 조직구성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는 본 법률의 목적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해 뛰어난 식견을 가진
者로 조직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조직으로
구성한다. 즉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은 매년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의해서 선정된 공공서비스에 따라 유
연하게 대응할 것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존의 심의회 등을 참고로 하면서, 위원 13명 이내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소장사무는 이미 다른 업무에 취직을 하고 있는
者를 포함하여 폭넓은 學識者,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과
비상근이 있다.

3) 위원회의 조치

관민경쟁입찰의 실시등에 해당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절
차(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적절히 관여하는 ‘제3자기관’인 감리위원회

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위원에 있
어서는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者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그리고 감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당 위원과 政令에서 정하는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者에 대해서는 관민경쟁입찰등의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⁷⁵⁾, 더욱이 감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가운데 위원 등
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은 심의 및
의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政
令으로 정하고 있다.

덧붙여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통상,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상
기의 조치(법 제10조 12호 등)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문위원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
원은 심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상기와 같이 법 제46조의 규
정에 의해 政令에서 정하고 있다.

3. 관민경쟁입찰 제도의 프로세스

(1) 관민경쟁입찰과 민간경쟁입찰

1) 관민경쟁입찰

관민경쟁입찰이란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
공서비스에 대해 ‘官’과 ‘民’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質 價格의 양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대해 관민경쟁입찰의 대
상으로 선정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화테스트법에 있어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情報公開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하며 확실한 실

75) 법 제10조 제12호 참조.

시를 위한 감독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동시에 실시요항의 작성 등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관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2) 민간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 또한 공공서비스에 있어 質 價格의 양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그 제공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官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상이점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민경쟁입찰과 같이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서비스에는 시장화테스트법에 근거하는 정보공개와 적절한 실시를 위한 감독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관여가 인정되며 적정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본 법률에 근거하는 민간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과 경비의 삭감을 실현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정하고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나 이하의 점이 통상의 민간위탁과 상이하다.

【중전의 민간위탁과 시장화테스트법상의 민간경쟁의 차이점】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종래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개시(공개)를 의무 지우는 것으로 官과 民과의 비용이나 서비스 내용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는 실시요항에 있어 ① 확보해야 할 서비스의 質이나 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

隨意契約을 배제하고 가격의 절감은 물론 서비스의 質을 평가하는 입찰방식(종합평가방식)을 채용한다는 점

② 적정한 사업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수탁사업자에 대해 법령상의 비밀을 지킬 의무나 의제공무원(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적용됨

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감독규정(보고징수, 입회검사, 필요한 조치의 지시)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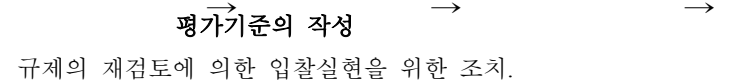
시장화테스트는 각 단계에 있어 ‘제3자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으므로, 적극적인 테스트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입찰절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화테스트법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 등은 민간기업 이 외에도 NPO법인, 사회적 기업가 등도 참가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구된다.

3) 관민경쟁입찰의 절차

官이 낙찰했을 경우는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인 후, 계속적으로 특정 공공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낙찰했을 경우는 법령의 특례가 적용됨과 동시에 감독(보고징수, 입회검사), 비밀보관유지의무, 의제공무원(준공무원으로 의제한다.)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적정하게 특정 공공서비스가 실시되게 된다.

그 절차로는 평가기준의 작성 입찰실시 준비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낙찰자의 선정 낙찰자와의 계약 평가의 실시의 순서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다음은 위의 시장화테스트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관민경쟁입찰의 절차】



입찰실시 준비

1. 정부행정기관(省廳)과 내각에 의해 선정된 시장화테스트의 대상사업에 관해서 입찰실시를 준비.
2. 각 省廳은 대상사업에 관한 조달기획입안부문과 집행부문을 명확히 분리하여 조치를 강구.



3. 집행부문을 관민경쟁입찰에 참가 가능하게 자립적인 단위로 행정조직을 재편성.
4. 조달기획입안은 입찰의 대상범위에 있어 직접적·간접적인 비용, 조직구성 및 담당하는 업무를 상세하게 공개.
5. 민간부문이 낙찰된 경우, 직원의 재배치계획을 입안.
6. 관민간의 경쟁조건의 균일화를 확보.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1. 실시방법을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
2. 관민간의 경쟁조건의 균일화를 확보.

낙찰자의 선정

1. 가격과 질의 양면으로부터 제안사항을 평가.
2. 품질관리와 확보, 수단의 제안주사 심사.
3. 공무원의 고용에 대한 배려의 조사.
4. 국민에의 설명책임에 도움이 되는 선정과정의 신속한 공표.

낙찰자와의 계약

1. “위탁경쟁형”과 “양도경쟁력”에 응하여 계약.
2. 적절한 리스크분담을 배려한 계약규정.

평가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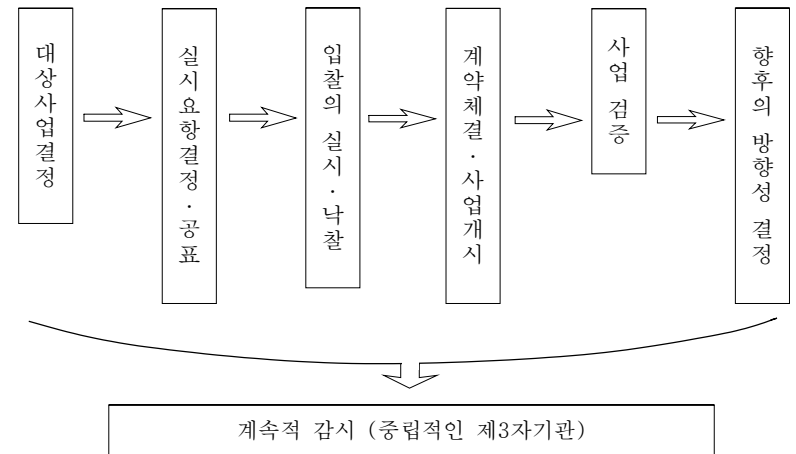
1. 사업평가 모니터링의 실시.
2. 이용자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의 개선.
3. 제3자기관은 사업실시의 전체를 통한 경쟁입찰의 각 단계에서 평가를 하며, 적절한 관민경쟁환경의 확보를 도모.

4. 입찰의 준비단계에서는 공적부문의 비용의 適正性 및 開示性이 확보되는 평가 인증을 실시.
5. 실시방침에 정한 절차 및 판단기준의 공정성, 관민경쟁조건의 공평성이 확보되는 평가를 실시.

시장화테스트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 있어서도 공공서비스를 경쟁 환경에 속해 돌므로 인해 보다 좋은 서비스제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이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중요성’이라는 생각은 시장화테스트의 근본이다.

즉 시장화테스트란, 어떤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官과 民이 대등한 입장에서 競争入札에 참가하여 가격 질의 양면에서 가장 뛰어난 者가 대상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官과 民이 경쟁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점이 주목적으로 단순하게 공공서비스를 民間事業者에게 맡기는 事業移讓이 아니다.

【시장화테스트의 순서】



시장화테스트에서는 공적주체도 끝임 없는 노력을 하고 효율화를 실시하여야만 계속해서 공공서비스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화테스트의 주요한 목적은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코스트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의 담당자가 공적주체인지 민간사업자인지를 묻지 않고, 가장 적합한 者에게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시장화테스트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낙찰했을 경우에서도 사업이 독점이 되어, 경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쟁 속에서 지속되는 시스템이다.

(2) 실시방침의 작성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의의나 목표를 정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長은 관련되는 정보를 공표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에 관민경쟁입찰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 공공서비스를 선정하여 실시방침으로서 공표한다.

1) 기본방침의 책정

시장화테스트법은 공공서비스의 전반에 대해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실시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아래에서 민간사업자의 창의를 적절히 반영시키며, 국민을 위한 보다 良質이고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즉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關議決定되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을 두고 정부 전체의 공통의 지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민경쟁입찰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포함시키게 된다.⁷⁶⁾

이 기본방침은 민간사업자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며, 내각부가 關係府省등과 협의를 실시하며,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76) 법 제7조를 참조.

의 심의를 거친 후에, 關議決定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 책정이 된다. 즉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공공서비스는 다^④하고 다방면에 걸쳐있으며, 어떠한 업무가 관민경쟁입찰등에 적절한 것인지 또는 어떠한 업무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등, 미리 정부가 일률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하여 방침의 준비과정으로 민간사업자등으로부터의 요망을 감안하는 형태로 선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요구된 사항의 심의에 머무르지 않고, 대상 사업의 선정 프로세스 중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대상 사업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그 가부를 심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가 이루어진다.

그 심의내용에 있어서는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 해야 할 업무,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해야 할 업무, 폐지의 대상으로 해야 할 업무 등을 검토하며, 이른바 사업의 구분을 하여 실시한다.

2) 대상 사업의 선정

관민경쟁입찰등의 대상 사업^②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하와 같은 점이 고려된다.

공공서비스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官(행정)이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공공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이나 경비의 삭감을 도모함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적절히 반영시킬 필요성이 높은 업무인가에 관해서 검토한다.

종래의 입찰절차와 비교하여 보다 엄정한 투명성이나 공익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엄격한 감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官(행정)이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 ㉔본방침의 내용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실시하는 관점에서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을 개선하는 작업을 거친다. 필요에 따라서 대상사업의 추가 확대 등을 실시한다. 시장화테스트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본방침을 설정한다.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서비스개혁의 의의 및 목표를 제시한다.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실시해야 할 ㉑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 내용으로 不斷의 개선과 질의 향상 경비의 절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해 정부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계획’의 내용으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할 경우 법령의 특례가 필요하게 되는 업무 및 적용되는 특례에 관한 계획이 제시된다.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지방공공단체의 대처방안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한 계획’으로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함에 있어 법령의 특례가 필요하게 되는 업무 및 적용되는 특례에 관한 계획이 제시된다.

‘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서 선정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이것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의 범위, 실시 예정

기간, 시기,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사항, 이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특례의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 등이 제시된다.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서 선정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이것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의 범위, 실시 예정 기간, 시기,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사항, 이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특례의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 등이 제시된다.

‘폐지의 대상되는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이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폐지의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의 범위, 실시 예정 시기 등의 기본적 사항, 이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개폐 등의 기본적 사항 등이 제시된다.

‘상기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외의 사항으로서 관계기관과의 제휴 협력의 바람직한 규정에 대해서 제시한다.

(3) 실시요항의 작성 ㉘

입찰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상세한 내용 및 확보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의 質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입찰가격,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종래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 손해배상 책임의 분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요항을 작성하여 ‘합의제의 기관77)의 심의를 거친 위에 결정 공표한다.

그리고 실시요항의 작성의 필요성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 및 경비의 삭감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적정

77) 지방공공단체가 시장화테스트법에 따라 관민경쟁입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과정의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서 공공서비스에 관해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審議會 그 외의 合議制의 기관을 설치할 것을 의미한다.

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78)’에서 국민경쟁입찰등의 대상으로 발탁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개개의 공공서비스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설정하여 국민경쟁입찰 등의 실시요항에 대해 치밀한 설계를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작성한다.

‘실시요항’의 책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大臣등이 그 案을 작성함으로써 국민경쟁입찰 등의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것을 결정 공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경쟁입찰의 실시 낙찰자의 결정

1) 입찰의 실시

평가에 있어 합의제의 기관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質의 유지 향상 경비 삭감의 견지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특정 공공서비스의 담당자로서 선정한다. 입찰의 실시에 있어 그 과정[국민경쟁입찰의 입찰참가 절차(수속)]은 다음과 같다.79)

민간사업자는 실시요항에 따라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에 대해 입찰 관계서류(이른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실시한다.

국가 행정기관 등의 長은 실시요항에 따라서 스스로의 입찰 관계서류(이른바 입찰 제안서)를 작성한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1), 2)의 서류를 감리위원회에 송부한다.

78) 법 제7조 참조.
79) 법 제11조 참조.

한편, 민간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민경쟁입찰과는 달리 행정기관(官)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절차(수속)는 상기 1)만을 실시한다.

2) 낙찰자 결정

국민경쟁입찰에서는 官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실시요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부처가 공공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장 적합하게(뛰어난) 신청을 한 者를 공공서비스의 담당자로서 결정한다.

민간경쟁입찰에서도 똑같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요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소관부처가 질과 가격에 대해 평가를 하며 가장 적합하게(뛰어난) 신청을 한 者를 공공서비스의 담당자로서 결정한다.

국민경쟁입찰과 민간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의 차이는 감리위원회의 관여의 유무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민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낙찰자등의 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4.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행정기관 등)

閣議決定되는 ‘공공서비스 개혁기본방침’을 책정할 때는 넓게는 국가(중앙정부)의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국민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란 어느 범위까지를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의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및 ‘특수법인(주식회사인 것을 제외한다.)’을 가리킨다.

(1) 국가의 행정기관

1)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각에 설치한 기관(내각부는 제외한다.)’

內閣官房, 內閣法制局, 安全保障會議, 高度情報通信네트워크社會推進本部, 都市再生本部, 構造改革特別區域推進本部, 知的財産戰略本部, 地球溫暖化對策推進本部, 地域再生本部가 해당한다.

2) ‘內閣府, 宮內廳 및 內閣府設置法(1999년=平成11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內閣府, 宮內廳 및 內閣府의 ‘위원회’ 및 ‘청’으로 구체적으로는 內閣府, 宮內廳, 公正 去來委員會, 國家公安委員會, 防衛廳, 防衛施設廳, 金融廳이 해당한다.

3) ‘국가행정조직법(1948년=昭和23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內閣의 總括하의 행정기관 중 內閣府 이외의 ‘省’, ‘委員會’ 및 ‘廳’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행정기관】

省	委員會	廳
총무성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법무성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외무성		
재무성		국세청
문무과학성		문화청

省	委員會	廳
후생노동성	중앙노동위원회	사회보험청
농림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토교통성	선원노동위원회	기상청, 해상보안청, 해난심판청
환경성		

4) ‘내각부설치법 제39조 및 제55조 및 宮內廳法(1947년=昭和22년 법률 제70호)제16조 제2항의 기관 및 내각부설치법 제40조 및 제56조(宮內廳法 제18조 제1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특별한 기관’

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의 外局의 위원회 및 청에 설치된 기관 및 특별한 기관(예를 들면, 경찰청).

5)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 2의 시설 등 기관 및 동법 제8조의 3의 특별한 기관’

各省 및 各省의 위원회 및 청에 설치된 시설 등 기관 및 특별한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등 기관에 대해서는 各省 설치법 등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며, 그 총수는 약 150여개 이다.

그리고 특별한 기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무성에 설치된 특별한 기관) 등을 가리킨다.

더욱이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立法府’인 ‘國會’, ‘司法府’인 ‘裁判所’를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會計檢查員 및 人事院에 대해서도 兩 기관이 내각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독립행정법인

獨立行政法人 일람⁸⁰⁾

內閣府所管 (5)	】
獨立行政法人國立公文書館 獨立行政法人駐留軍等勞働者勞務管理機構 ◎獨立行政法人國民生活센터(센터) ◎獨立行政法人北方領土問題對策協會 ◎獨立行政法人沖繩科學技術研究基盤整備機構	
總務省所管 (3)	
◎獨立行政法人情報通信研究機構 獨立行政法人統計센터(센터) ◎獨立行政法人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外務省所管 (2)	
◎獨立行政法人國際協力機構 ◎獨立行政法人國際交流基金	
財務省所管 (5)	
◎獨立行政法人酒類綜合研究所 獨立行政法人造幣局 獨立行政法人國立印刷局 ◎獨立行政法人通關情報處理센터(센터) ◎獨立行政法人日本萬國博覽會紀念機構	
文部科學省所管 (26)	
◎獨立行政法人國立特殊教育綜合研究所 ◎獨立行政法人大學入試센터(센터) ◎獨立行政法人國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獨立行政法人國立女性教育會館 ◎獨立行政法人國立國語研究所	

80) 2006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獨立行政法人國立科學博物館
 - ◎獨立行政法人物資 材料研究機構
 - ◎獨立行政法人防災科學技術研究所
 - ◎獨立行政法人放射線醫學綜合研究所
 - ◎獨立行政法人國立美術館
 - ◎獨立行政法人國立博物館
 - ◎獨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
 - ◎獨立行政法人教員研修센터(센터)
 - ◎獨立行政法人科學技術振興機構
 - ◎獨立行政法人日本學術振興會
 - ◎獨立行政法人理化學研究所
 - ◎獨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發機構
 - ◎獨立行政法人日本스포츠(스포츠)振興센터(센터)
 - ◎獨立行政法人日本藝術文化振興會
 - ◎獨立行政法人日本學生支援機構
 - ◎獨立行政法人海洋研究開發機構
 - ◎獨立行政法人國立高等專門學校機構
 - ◎獨立行政法人大學評價·學位授與機構
 - ◎獨立行政法人國立大學財務經營센터(센터)
 - ◎獨立行政法人미디어(미디어)教育開發센터(센터)
 - ◎獨立行政法人日本原子力研究開發機構
- 厚生勞働省所管 (14)
- ◎獨立行政法人國立健康·營養研究所
 - ◎獨立行政法人勞働安全衛生綜合研究所
 - ◎獨立行政法人勤勞者退職金共濟機構
 - ◎獨立行政法人高齡障害者雇用支援機構
 - ◎獨立行政法人福祉醫療機構
 - ◎獨立行政法人國立重度知的障害者綜合施設のぞみの(희망의)園
 - ◎獨立行政法人勞働政策研究·研修機構
 - ◎獨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發機構
 - ◎獨立行政法人勞働者健康福祉機構
 - ◎獨立行政法人國立病院機構

- ◎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
- ◎ 独立行政法人医薬基盤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年金·健康保険福祉施設整理機構
-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 農林水産省所管 (17)
- 独立行政法人農林水産消費技術センター(센터)
- ◎ 独立行政法人種苗管理センター(센터)
- ◎ 独立行政法人家畜改良センター(센터)
- 独立行政法人肥飼料検査所
- 独立行政法人農薬検査所
- ◎ 独立行政法人材木育種センター(센터)
- ◎ 独立行政法人水産大学校
- ◎ 独立行政法人農業·食品産業技術総合研究機構
- ◎ 独立行政法人農業生物資源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農業環境技術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国際農林水産業研究センター(센터)
- ◎ 独立行政法人森林総合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水産総合研究センター(센터)
- ◎ 独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
- ◎ 独立行政法人農業者年金基金
- ◎ 独立行政法人農林漁業信用基金
- ◎ 独立行政法人緑資源機構

- 經濟産業省所管 (11)
- ◎ 独立行政法人經濟産業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
- ◎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保險
- ◎ 独立行政法人産業技術総合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
- ◎ 独立行政法人新エネルギー(에너르기)·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 ◎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新興機構
- ◎ 独立行政法人原子力安全基盤機構

- ◎ 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 ◎ 独立行政法人石油天然가스(가스)·金属鉱物資源機構
- ◎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国土交通省所管 (19)

- ◎ 独立行政法人土木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建築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交通安全環境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海上技術安全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港湾空港技術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電子航法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航海訓練所
- ◎ 独立行政法人海技教育機構
- ◎ 独立行政法人航空大学校
- 自動車検査独立行政法人
- ◎ 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
- ◎ 独立行政法人国際観光振興機構
- ◎ 独立行政法人水資源機構
- ◎ 独立行政法人自動車事故対策機構
- ◎ 独立行政法人空港周辺整備機構
- ◎ 独立行政法人海上災害防止センター(센터)
- ◎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
- ◎ 独立行政法人奄美群島振興開発基金
- ◎ 独立行政法人日本高速道路保有·債務返済機構

環境省所管 (2)

- ◎ 独立行政法人国立環境研究所
- ◎ 独立行政法人環境再生保全機構

合計 104法人

(注) ◎印의 法人은 特定独立行政法人以外の 独立行政法人(役職員이 国家公務員의 身分을 가지지 않는 者)를 표시한다. 93法人

(3) 국립대학법인 및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⁸¹⁾

【국립대학 등의 기관】

国立大学法人(87) 北海道大学 北海道教育大学 室蘭工業大学 小樽商科大学 帯広畜産大学 旭川医科大学 北見工業大学 弘前大学 岩手大学 東北大学 宮城教育大学 秋田大学 山形大学 福島大学 茨城大学 筑波大学 筑波技術大学 宇都宮大学 群馬大学 埼玉大学 千葉大学 東京大学 東京医科歯科大学	山梨大学 信州大学 岐阜大学 静岡大学 浜松医科大学 名古屋大学 愛知教育大学 名古屋工業大学 豊橋技術科学大学 三重大学 滋賀大学 滋賀医科大学 京都大学 京都教育大学 京都工芸繊維大学 大阪大学 大阪外国語大学 大阪教育大学 兵庫教育大学 神戸大学 奈良教育大学 奈良女子大学 和歌山大学 鳥取大学	宮崎大学 鹿児島大学 鹿屋体育大学 琉球大学 総合研究大学院大学 政策研究大学院大学 北陸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奈良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	--	---

81) 2006년 5월 16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東京外国語大学 東京学芸大学 東京農工大学 東京芸術大学 東京工業大学 東京海洋大学 お茶の水女子大学 電気通信大学 一橋大学 横浜国立大学 新潟大学 長岡技術科学大学 上越教育大学 富山大学 金沢大学 福井大学	島根大学 岡山大学 広島大学 山口大学 徳島大学 鳴門教育大学 香川大学 愛媛大学 高知大学 福岡教育大学 九州大学 九州工業大学 佐賀大学 長崎大学 熊本大学 大分大学	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 (4) 人間文化研究機構 自然科学研究機構 高エネルギー加速器研究機構 情報・システム研究機構
---	--	--

(4) 特別法人(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특수법인으로는 주식회사인 특수회사는 제외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시장화테스트법의 제1조의 규정인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그 실시를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는 관점에서 이것을 재검토하여’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미 ‘민영화’가 실시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특수회사를 본 법률에 있어 ‘국가의 행정기관 등’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법률에서 인정하는 특수법인은 다음과 같다.

【所管府省의 特別法人⁸²⁾】

沖繩振興開發金融公庫	內閣府 (1)
日本郵政公社 公營企業金融公庫 日本放送協會	總務省 (3)
国民生活金融公庫 國際協力銀行 日本政策投資銀行	財務省(3)
日本私立學校振興·共濟事業團 放送大學學園	文部科學省(2)
農林漁業金融公庫 日本中央競馬會 地方競馬全國協會	農林水產省(3)
中小企業金融公庫 商工組合中央金庫 日本自轉車振興會 日本小型自動車振興會	經濟產業省(4)
住宅金融公庫 (財)日本船舶振興會	国土交通省(2)
(注) 複數府省共管的 特殊法人은 주요한 所管府省만을 소개	

82) 2006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5. 관민경쟁입찰을 위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역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서구 선진 국가와 같이 의료보험과 연금, 介護保險의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제도의 정비에 충실을 기하면서, 사회복지국가에의 길을 선택하였다. 현대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및 기능은 夜警國家라는 현대국가가 이룩해 온 사회질서유지 기능(警察 國防 消防)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광범한 범위에 미친다. 그 결과 행정기능은 확대되고 국민의 행정에의 기대는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의 입장에서 국민 및 지역의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공공서비스)를 공적자금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관료조직과 행정조직)을 이용하면서,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공공서비스의 행정서비스화라는 현상인 것이다.”⁸³⁾

그러나 경제성장과 본격적인 小高齡化(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에 처해지게 된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국민과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종래와 같이 행정서비스에 의해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종래 행정서비스로서의 내용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再考함과 동시에 그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압력을 받고 있다.⁸⁴⁾

관료기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더욱이 자신들의 업무가 官民競爭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가 솔선하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화테스트를 하나

83) 岸本大樹, 任務の共同遂行(公私協働)と行政上の契約(4 完)-ドイツ連邦行政手続法第四部『公法契約』規定の改正論議における協働契約論-, 自治研究 82(4) (通号 986), 2006.4. 134면 참조.

84) 官脇淳, 公共經營論, PHP研究所, 2003年. 24, 25면 참조.

의 행정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시장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중앙정부)의 역할⁸⁵⁾

1) 목적을 명백히 하고, 제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며, 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담당하는 업무 전부를 펼쳐놓고 **맡**이 담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고유의 업무(Inherently Government)인지 아니면 시장에 있어 민간주체와의 경쟁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에 대해 不斷의 검증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리고 행정부가 담당하는 전부를 대상으로 상정하여, 민간주체에 의한 기회의 제공을 시장화테스트를 통해서 고려하는 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2) 실시할 순서와 규범의 본질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검증)을 통해 실무적인 규범의 핵심과 개념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야만 구체적인 모델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제도적인 제약 요인이 다소 나온 지방공공단체가 국가(중앙정부)에 선행해서 시장화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성과에 특화된 입찰양식과 계약의 형태(본질), 이것에 근거한 성과의 모니터링(Performance Monitoring)과 수단 등에 있어 현재까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그다지 경험이 없었으며 국가가 솔선하여 실무적인 사고와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항목을 기초로 국가로서 어떠한 법제도의 틀을 구축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그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4) 시장화테스트의 실시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와 규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장해적인 규제와 제도가 존재한

85) 전계자료,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30면 참조.

다면 시장화테스트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하며, 그러한 구조에의 변화에 의해서만 경쟁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시장화테스트는 官製市場⁸⁶⁾ 개방의 도구로서도 기능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이상, 규제완화적인 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전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2) 지방공공단체의 역할⁸⁷⁾

1) 중앙정부와 다소 사정이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방공공단체는 현행법의 틀에서 보더라도 많은 재량을 가지고 실시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검토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입찰절차와 내부절차의 비용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하여, 민간주체로부터 당해서비스에 관련되는 제안 등을 모집하며, 평가의 주체로서 민간사업자가 우수하다면 민간에 사업을 이양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2)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 기존의 법 내지는 제도의 틀 안에서 시장화테스트를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業”을 규율하는 규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만약 규제 등의 장해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규제완화로 연결되는 틀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려운 요소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경제특구 등 기존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행정부 내부에서 시장화테스트 등의 방법을 수행하는 즉 관민경쟁입찰 등을 행정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시키면 투명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중립적인 제3자적 역할이 가능한 감시의 체제를 전제해 두어야 하

86) 官製市場에 관한 자료로는 八代尚宏 (編集), 『官製市場』改革 シリーズ 現代經濟研究, 日本經濟新聞社, 2005년이 유익하다.

87) 전계자료,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30면 참조.

며, 그리고 실무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슷하다.

4) 小子高齢化(저출산 고령화)에 동반하는 시민사회의 변환으로 인해 행정에 기대하는 업무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면, 일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확대는 단순히 시민의 요구에 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행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축출하여, 행정이 행하여야 하는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한다.

5) 업무별로 행정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항상 이것을 관리하며, 정보공개를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화테스트는 현재의 행정사무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에 대해 보다 효율적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도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이라 하겠다.

6) 시행하는 조직의 체계나 업무부분의 공무원의 布陣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등에 관한 행정부 자체의 전략적인 과제로도 여겨진다.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장기적으로 인원(공무원 축소)의 배치를 염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직접 담당한 비효율적인 면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 민간주체에게로 業務移管을 한다는 것을 하나의 選擇사항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방공공단체에 요구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화예로의 전환은 공무원의 인력삭감과 배치전환으로 인해 효과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3) 민간사업자의 역할

관민경쟁입찰 민간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민간사업자는 행정주체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契約を締結)”하여 당해 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한다, 라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의 계약은 기본적

으로 민법에 규율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委託”이라는 행정법령에서 볼 수 있는 법 개념이 병용되어 있다. 그리고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官民競争入札實施要項” 및 당해 신청의 내용에 따라서 書面에 의해서 “대상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대상공공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⁸⁸⁾

민간사업자의 역할로는 관민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 민간사업자는 기본이념(법 제3조)에 따라, 이하의 내용에 관해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해 적절한 실시를 하여야할 임무를 가진다.⁸⁹⁾

1) 창 의 와 아 이 디 아 를 활 용 하 여, 업 무 의 公 共 性 에 근 거 하 여 공 공 개 혁 이 정 체 됨 이 없 이 적 정 하 고 확 실 히 실 시 될 수 있 도 록 해 야 한 다.

2) 공 공 서 비 스 의 업 무 가 직 접 국 가 등 의 행 정 기 관 등 에 서 민 간 사 업 자 로 변 경 됨 에 따 라 서 국 민 의 불 안 을 초 래 하 는 것 이 없 게 국 민 의 신 퇴 를 확 보 하 는 것 이 중 요 하 다.

6.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관민경쟁입찰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공공서비스이며 지방공공단체에 있어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이 실시됨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바람직한 실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며 한층 더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1) 지방공공단체의 실시절차 등

본 법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실시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88) 법 제20조 제1항 참조.

89) 전계자료,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31면 참조.

에도 법 제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공공서비스의 수익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본 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서 실시할 특정공공서비스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과 경비의 삭감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경우에는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기대된다.

법에 근거하는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이념은 국가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방공공단체등(지방3공사, 지방독립행정법인을 포함한다.)의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실시를 저해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공단체는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의견 청취의 절차에 있어 적극적인 제안 등이 기대된다.

그리고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 주체적으로 실시되도록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실시 상황에 관해 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실시 방침의 책정 상황, 선구적인 실시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의 활용 등을 이용하여 넓게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더욱이 법령의 특례를 강구할 필요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스스로 필요한 규칙 등을 정하여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합의제 기관의 설치

지방공공단체는 법에 근거하여 특정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공공서비스에 관해서 뛰어난 식견을 가진 者로 구성된 심의회 그 외의 합의제의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⁹⁰⁾

90) 법 제47조 참조.

합의제의 기관은 국가에 있어서의 감리위원회에 상당하는 기관이며, 실시요항의 책정, 관민경쟁입찰의 낙찰자와 관련되는 평가의 실시 및 낙찰 사업자와의 계약의 변경 등,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이 합의제의 기관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제도의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의제의 기관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동종의 기능을 가진 심의회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

(3) 지방공공단체의 업무

지방공공단체의 업무(법률에서 정한 지방공공단체의 창구업무)그리고 관민경쟁입찰등의 실시절차는 지방공공단체가 특정공공서비스에 대해 관민경쟁입찰등을 실시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창구업무의 특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 1) 호적법에 근거하는 호적등본 등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그 인도(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2) 지방세법에 근거하는 납세증명서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그 인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3)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하는 등록원표의 복사 등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그 인도(법 제34조 제1항 제3호)
- 4) 주민기본대장법에 근거하는 주민표의 복사 등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인도(법 제34조 제1항 제4호)
- 5) 주민기본대장법에 근거하는 호적의 부표사본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인도(법 제34조 제1항 제5호)
- 6) 인감증명서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인도(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이러한 6가지 업무에 대해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이 스스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충분히 배려한 후, 이러한 업무를 관민경쟁입찰등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취지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제 4 장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사점

제 1 절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등의 문제점

민영화의 일반적인 논의에서도 문제가 되는 민간이양한 후의 공공성의 확보에 대한 방안은 이전부터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영국통신(British Telecom)은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독점사기업으로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제정 내용으로는 공공성과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신시설의 경우 긴급서비스와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유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자를 위한 시설마련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더욱이 특히 벽지와 농촌지역에 공중전화를 포함한 일반 전화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소비자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것은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의 예이다. 즉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재원의 합리적인 분배라는 차원에서 형평성이 강조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먼저, 향후의 문제점으로 시장경쟁 개념을 도입한 공공서비스개혁 법제의 경우는 어떠한 리스크를 내제하면서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시장화테스트로 인해 다양한 단체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協定(公私) 내지는 契約(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관리되어야 하는 리스크(Risk)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유형을 보면 不可抗力리스크, 法令變更리스크, 需要리스크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不可抗力리스크

不可抗力리스크⁹¹⁾란, 지진 등의 자연 재해의 발생에 의해 시설이 손상되어, 이것으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일정기간 불가능할 경우와 시설의 改築과 修理를 위해 추가지출이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경우⁹²⁾, 그 이외에 금리변동, 물가변동에 의해서 필요경비가 당초의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 검토를 필요로 한다.

원래 不可抗力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약당사자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귀책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의 위험부담의 규정⁹³⁾과 같이 계약 일반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法令變更리스크

法令變更리스크⁹⁴⁾란, 협정 내지는 계약의 체결 후, 예를 들면, 소비세의 개정으로 인해 稅率이 상승한 경우와 석면(Asbestos)⁹⁵⁾을 사용한

91) 不可抗力리스크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日本政策投資銀行PFIチーム, PFI実務のエッセンス, 有斐閣, 2004年. 156-170면을 참조.

92) 전계논문, 岸本太樹, 138면 참조.

93) 일본의 경우 민법 제534조의 위험부담의 규정에 내용을 두고 있다. 한 예로 채권자의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제5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특정물에 관한 물건의 설정 또는 이전을 쌍무계약의 목적의 경우,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멸실하거나 또는 손상했을 때에는 그 滅失 또는 損傷은 채권자의 부담하러 돌아간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401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물건이 확정했을 때부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534조(쌍무계약의 경우), 제535조(채무자의 경우)를 참고 바람.

94) 전계논문, 岸本太樹, 138면 참조.

95) 선진국에서는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현재 실시 중이다. 사용금지지는 물론 과거에 사용했던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설로 인해 법률에 의해 그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국민 주민에게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需要리스크

需要리스크란, 契約 당시 예상했던 시설이용의 需要가 실제로 있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⁹⁶⁾ 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徵收하는 이용료 수입이 저조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위치에 있는 국민 내지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外注化(민영위탁의 전반)의 방법이 指定管理者制度 등, 기존의 시장화테스트와 같이 코스트(cost)론(企劃立案과 實施의 分離)을 거론하면서, 행정조직과 공무원제도가 시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적 작용(또는 優越的地位)을 시민사회 속으로 확대 내지는 확산되어 버리는 위험이 있다.⁹⁷⁾

즉 단순화 시민사회에로의 權力移讓的인 업무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선진국가의 정책적인 흐름인 공권력의 역제를 표방하는 多元的 中層的인 구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公權力의 분산의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과 실제의 평가와 집행을 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리스크)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도 석면제거 작업은 많은 분진이 발생하므로 특수 방진복을 착용 후, 석면제거 작업을 하며, 작업한 석면폐기물은 입자가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기에 담아(내수재료로 2중으로 싸서) 수직 운반하여야 하며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은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 운반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이는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이다.

96) 전계논문, 岸本太樹, 138면 참조.

97) 今井照, 『自治体行政を 社会化 する 社会分権型アウトソーシング試論』, 特集 [社会化テスト]のすすめ, 月刊自治研 四月号, 2006年. 42면 참조.

2. 관민경쟁입찰 후의 공무원의 처우

관민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전 과정을 종료하여 민간사업자 낙찰된 경우 종전까지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던 者が 민간인으로 공공사무에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을 원할 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정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공무원의 처우

1) 민간이 落札한 경우의 국가공무원의 처우

관민경쟁입찰 등의 결과, 민간사업자가 낙찰했을 경우의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배치전환과 신규채용의 억제에 의해 대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구도를 설명한 그림은 다음의 표와 같다.⁹⁸⁾

2) 공무원의 이동을 원활화하는 퇴직수당의 특례

한편으로 관민경쟁입찰 등으로 낙찰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원활한 실시, 업무수행의 방법에 있어 다양한 창의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종사하고 있던 공무원의 수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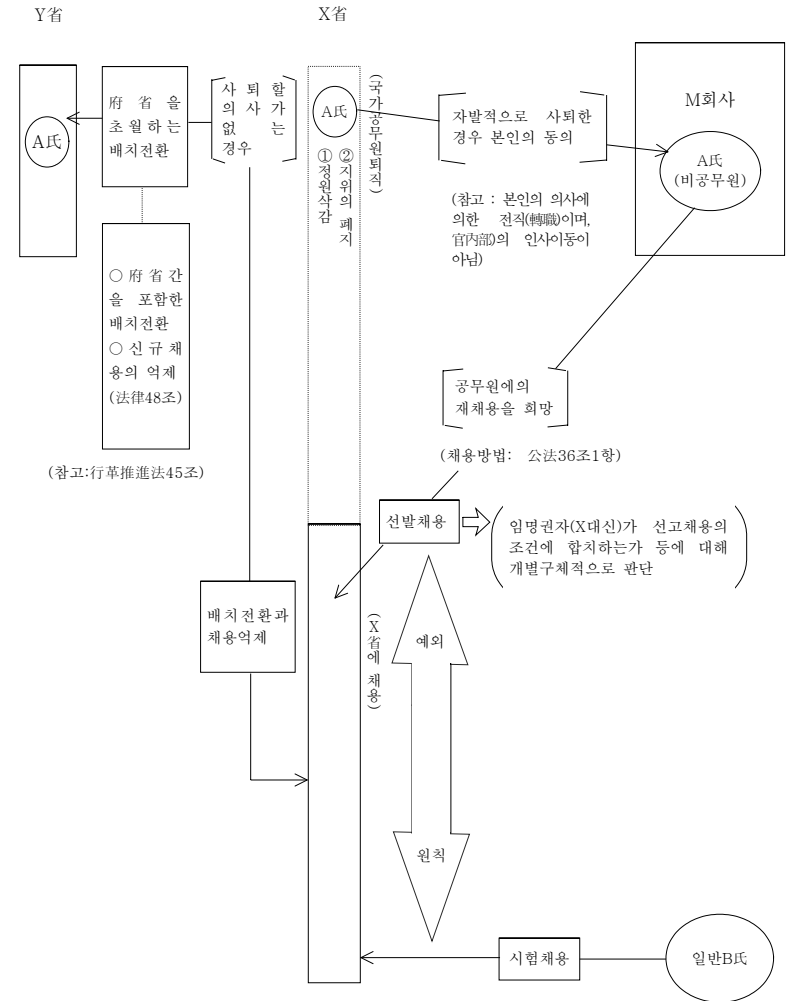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낮은 코스트로 제공한다고 하는 관민경쟁입찰 등의 목적에서도 합치한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되고 공무에 복귀했을 경우의 퍼드백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장 장치도 정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퇴직수당의 계산방법⁹⁹⁾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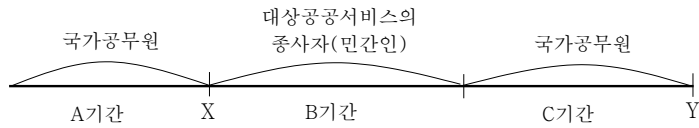
98) 전계자료,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58면 참조.

【官民競争入札等に 의해 민간이 落札한 경우의 국가공무원의 처우】



국가공무원을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낙찰기업에 고용되어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종사한 후, 국가공무원으로 복귀했을 경우 퇴직수당의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기간과 후의 국가공무원인 기간을 통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의 특례】



X의 시점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임명권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권장퇴직)하며 A의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B기간에서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낙찰기업으로부터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급여지급을 받는다.

B기간이 종료하고, 국가공무원으로 희망을 원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재채용이 가능하다.

Y의 시점(퇴직시)에서는 A와 C의 기간을 통산 한 액에서 먼저 수령한 액수와 B, C 기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2) 지방공무원의 처우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시장화테스트법에 근거하여 관민경쟁입찰 등을 실시함^④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근거로 하여 각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다. 즉 민간사업자가 낙찰했을 경우의 지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도 그 지방공공단체의 長이 법령의 범위 내에

서 적절히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수당은 각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특례 등에 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각 지방공공단체에 있어 이러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조례의 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⁹⁹⁾

3. 민간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민간사업자의 파산이나 철폐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게 되는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입찰참가자격으로서 개개의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필요한 경리적 기초나 기술적 기초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諸制度로서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의 보고 등 징수, 입회검사, 필요한 지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고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이러한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나 그 관계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되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파산 철폐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고, 적정하며 확실히 실시되도록 새로운 관민경쟁입찰등의 실시와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법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 이외에 보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즉 관민경쟁입찰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가 민간사업자로 확정된 경우 중립적인 제도 안정장치를 위해 보조

99) 전계자료,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59면 참조.

금 등에 관한 조치가 병행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참가기업인이 경영리스크 차원에서 보험機構와 같은 것을 설립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한다. 이는 법 제도적인 것이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인 발생을 유도하는 형식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시장화테스트법의 시사점

1.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시장화테스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이양은 가격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요소도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이 인정되게 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가지는 입찰에 의해 가격 또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지표로 인해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의 민영화나 공공개혁법제와의 상이점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예전의 PFI제도와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경쟁입찰 공모의 과정 및 입찰 후의 사업자와 행정기관과의 교섭(사업 조건의 조정 및 민간의 발의에 의한 사업 조건의 설정)이 법제화 되어 있으며, 그리고 민간기업자에 의해서 종전의 공공서비스가 실시되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그리고 일본정부 자문기구인 행정감량 효율화전문가회의(行政減量 効率化有識者會議¹⁰⁰⁾)는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5% 이상 감축 추

100) 行政改革推進本部事務局의 <http://www.gyokaku.go.jp/index.html>,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http://www.gyokaku.go.jp/genryokourituka/index.html>의 行政減量 効率化有識者會議의 홈페이지를 참조.

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¹⁰¹⁾

【일본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

사업	업종
통계조사	총무성 지정통계업 통계센터 업무
직업소개	관리직 경험자 교육 취업대상기업 개척업 관리직 및 기술자 직업 알선업
사회보험청	국민연금보험료징수 후생연금가입 촉진업 전화이용 연금상담
고용과 직업교육	사무직 직업훈련 젊은층 대상 직업훈련
등기	등기증명서 발급 업무

보고서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보다 감축을 더 많이 실시하여 1만 9640명을 감축시키기로 했다. 이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본 전체 국가공무원 33만 2000명의 6%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1개의 대상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징수 사회보험청의 업무 직업소개 고용 능력 개발업무 등기발급 통계조사 등 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기업이 입찰을 따내면 1 3년 정도 시장화테스트 기간을 거쳐 성과를 평가한 뒤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민영화한다.

101) 行政減量 効率化有識者會議, 国の行政機關の定員の純減方策について(最終取りまとめ), 2006年=平成18年 5월 26日, 2면과 자료 6을 참조.

이들 업무가 민영화되면 기존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삭감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 앞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경쟁(Public-Private Competition)으로 코스트가 줄어든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중 입찰 참여에 필요한 민간기업의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업무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 등도 중요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민간의 창의와 지속적인 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방식의 도입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표 **일본 시장화테스트법에 의해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 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면서 일본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어느 쪽이 공공서비스 담당자로 적임자 인가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하는 ‘시장화테스트’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려는 시점에 있다. 공공서비스의 활성화는 측면이 이곳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이러한 사업은 민영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화테스트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는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감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본문에서 살펴보면 시장화테스트는 공공서비스 시장을 놓고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한 뒤 신설된 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가 적임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상호간에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2.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에 있어 금전적 가치(VFM)의 실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계약의 프로세스에 있

어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의 확보에 가세하여 정책부문과 집행부문을 분리시켜, 집행부문의 발주 상황을 정책 부문이 항상 감시하는 메카니즘의 구축, 시장경쟁적인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 이와 같은 새로운 官民 상호간의 競争入札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移讓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해 행정법학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향후의 학문적 변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법률은 종래의 “계약”의 형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위탁의 경우 그 계약은 민법상의 형태에 의해서 체결한다. 민영화에 있어서 계약의 형태를 청부계약과 위임계약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¹⁰²⁾ 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정관리자제도는 ‘指定’에 의해서 관리 권한이 위임되며, 앞서 살펴본 제2장의 **【민영화의 다른 유형과 관민경쟁입찰(시장화테스트법)】**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민경쟁입찰의 결정에 의해 낙찰된 민간사업자와의 사이에서는 시장화테스트법의 규정과 민법상의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된다.

계약의 성격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은 시장화테스트법에서는 “정부의 행정기관의 長은 낙찰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한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 실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청부계약과 위임계약】

	청부계약	위임계약
계약내용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	계속적인 사무처리(사실행위를 포함 한다.)를 목적으로 함

102) 小原昇, 行政事務の外部委託 労働關係上の留意点, 学陽書房, 1995年, 40 47면 참조. 그리고 稲沢克祐, 自治体の市場化テスト, 学陽書房, 2006年, 13면을 참조.

	청부계약	위임계약
대표적 계약	조사위탁계약, 건설공사계약	청사청소의 위탁계약
수입자의 채무	사업의 완성이 없으면, 보수 의 청구가 불가. 추가적인 보수의 청구도 불가능 함	성실한 사무를 처리할 의무는 있 으나, 업무완성의 의무는 없다.
통상의 용어	업무위탁, 공사청부계약	업무위탁, 관리위탁, 포괄적인 민간위탁, 지정관리자제도

그리고 계약의 변경과 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 변경 등에 관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의 성격상 행정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계약”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民間委託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계약의 특성과 향후 필요에 의해 도입함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시장화테스트법상 계약의 특성과 시사점】

- 節次的인 構造의 구축을 骨子로 하고 있다는 점
-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법적인 행정계약 방법을 병행하여 이용한다는 점
- 공법계약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
- 민간사업자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일체의 업무를 선정하여 계약한다는 점(계약의 포괄성)

3. 정부관여의 최소화와 질적 제고

본고에서 검토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내용에는 공공서비스의 실시 당사자의 변화(공공서비스 실시 주체의 변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배치전환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변화와 공무원의 배치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실 있는 질적 향상을 제고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특히 공공서비스 개혁 법제의 중요한 시사점은 공익확보를 위한 법제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재원에 대한 합리적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유도를 도모하며, 공공서비스의 행위주체의 변화에 관한 법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다는 점 그리고 종국적으로 행정책임의 다양화와 감독의 형태에 관한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서비스 개혁법제의 분석의 기대효과】

- 공익확보를 위한 법제를 파악
- 공공재원에 대한 합리적 운영과 방향을 제시
-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 유도
- 공공서비스의 행위주체의 변화에 관한 법제적인 문제점을 제시
- 종국적으로 행정책임의 다양화와 감독의 형태에 관한 방향 제시

더욱이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과 실시방침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官民競爭入札等を 도입한 제도 도입은 정부의 관여와 규제를 최소화하며 민간의 참여를 공공서비스에 도입한다는 취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4. 그 이외 남겨진 문제점과 시사점

우리의 경우 민영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해서 민간자본유치제도에 한정하여 설명하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1994년)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사업운영 분야는 도로, 항만, 학교, 군 막사, 보건의료시설 등이 위주이며, 특히 교통, 환경, 관광 문화가 대부분이다.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은 사전자격 심사 선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의 주도에 의해 민간투자위원회에서 주요 민자정책의 의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주요부처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심사는 대부분 전문기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며, 정부 중장기계획, 편익증대 효과, 사업성, 비용 절감,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04년 제정)’은 지역 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특례법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특구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부시장(판제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장화테스트법의 도입 움직임은 없으며, 정확한 비교법적 분석보다는 우리가 향후 도입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화테스트법(공공서비스개혁 법제)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는 一刀兩斷적인 개혁이기보다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에 입각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이라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단순히 공공의 서비스를 외부의 사업 즉 민간인에 의해서 수행 가능하게 이전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쟁입찰”의 형식을 도입한 취지는 점차적인 外注化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먼저 자본시장의 규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장에 적응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민간의 제안에 의해 “競爭入札”이라는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원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화테스트’를 한 다음 민간에 의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점진적인 개혁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경비와 인원에 의해 실시되어 온 것을 형량 비교하여 재원 절감을 자본시장에서 테스트 한 후 실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더욱이 공공성(공익성)을 확보 내지는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즉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행정에 의한 감독 관리 장치를 두면서 서서히 실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위험부담은 결국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적정한 위험분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위험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때 행정기관의 계약 등에 의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그 이외 향후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화테스트법은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질의 개선’ 더욱이 ‘행정부분의 근본적 개혁’에 도달하려는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는 크다 할 것이나, 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분야에 관련하는 정부기관의 관계자, 국민에 대한 의식 개혁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화’의 개념이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시장화란, 특정사업에 대해 민간이 투입하는 방식, 특정급부 주체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 그리고 특정한 분야를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의 경우 시장화테스트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먼저 대상 사업을 정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업무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경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①

그리고 특히 고용제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예산제도, 공물관련 제도¹⁰³⁾에 대한 개혁이 병행되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제도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재정법과 관련된 것이기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형평성이 강조되는 경쟁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의 공공서비스 개혁 법제에서 논의되는 ‘시장화’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근거에는 “정부업무의 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일본문헌

- 小林武, 安本典夫, 見上崇洋 (編集), 『民』による行政 新たな公共性の再構築, 法律文化社, 2005. 4.
- 新日本パブリック アフェアーズ, これでわかる『市場化テスト』~官と民のパートナーシップで『公』を創る~,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06年.
- 井熊均, 図解 よくわかる公共(パブリック)マーケット ビジネス 再び注目を集める20兆円市場, 日刊工業新聞社, 2005年.
- 竹下謙, 市場化テストをいかに導入するべきか 市民と行政, 公人の友社, 2006年.
- 山村恒年(編集), 新公共管理システムと行政法 新たな行政過程法の議論 深化を目指して, 信山社出版, 2004年.
- 小原昇, 行政事務の外部委託 労働関係上の留意点, 学陽書房, 1995年
- 橋本博之,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案について, 自治研究 第82巻 第6号, 2006. 6.
- 武藤博己, 入札改革 (新書), 岩波書店, 2003年.
- 行政減量 効率化有識者会議, 国の行政機関の定員の純減方策について (最終取りまとめ), 2006年=平成18年 5月 30日.
- 今井照, 『自治体行政を 社会化 する 社会分権型アウトソーシング試論』, 特集[社会化テスト]のすすめ, 月刊自治研 四月号, 2006年.
- 日本政策投資銀行PFIチーム, PFI実務のエッセンス, 有斐閣, 2004年.
- 八代尚宏, 『官製市場』改革 シリーズ 現代経済研究, 日本経済新聞社, 2005年.
- 芝池義一, 小早川光郎, 宇賀克也,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2004年.

103) 碓井光明, PFI-国公有財産有効活用, 芝池義一, 小早川光郎, 宇賀克也,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2004年. 204-207면 참조. 즉 행정재산에 대한 유용한 활용을 위해 사권설정금지 등에 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宮脇淳, 公共経営論, PHP研究所, 2003年.

_____, PPPが地域を変える アウトソーシングを超えて 官民協働の進化形, ぎょうせい, 2005年.

岸本太樹, 任務の共同遂行(公私協働)と行政上の契約(4 完) - ドイツ連邦行政手続法第四部『公法契約』規定の改正論議における協働契約論 -, 自治研究 82(4) (通号 986), 2006.4.

塩野宏, 行政法 (第二版), 有斐閣, 2001年.

_____, 行政法 1 行政法総論, 有斐閣, 2005年.

_____, 行政法 2 行政救済法, 有斐閣, 2005年.

原田尚彦, 行政法要論(全訂第六版), 学陽書房, 2005年.

戸部真澄, 特別区による家事援助者派遣事業の仕組みと国家賠償責任(平成11.3.16東京地裁判決), 自治研究, 77(8) (通号 930), 第一法規, 2001年.

人見剛, 市場化テスト法案分析 行政法学の観点からの検証, 特集[社会化テスト]のすすめ, 月刊自治研 四月号, 2006年.

碓井光明, 公共契約法精義, 信山社, 2005年.

榊原秀訓, 尾林芳匡, Q&A市場化テスト法 仕組みと論点, 自治体研究社, 2006年.

PFIインフラ整備の課題() 公物管理法, 『PHP政策研究レポート』(Vol.6 No.75) 2003年 9月.

原野翹, 晴山一穂, 浜川清, 民営化と公共性の確保, 法律文化社, 2003年

三橋良士明 榊原秀訓(編著), 行政民間化の公共性分析, 日本評論社, 2006年.

本間正明 (著), 市場化テスト研究会 (著), 概説 市場化テスト 官民競争時代の到来, NTT出版, 2005年.

野田由美子, 民営化の戦略と手法 PFIからPPPへ, 日本経済新聞社, 2004年

松塚晋輔, 民営化の責任論, 成文堂, 2003年.

稲沢克祐, 自治体の市場化テスト, 学陽書房, 2006年.

榊原秀訓, 尾林芳匡, 家田愛子, イギリスの市場化テストと日本の行政, 自治体研究社, 2006年.

南学, 小島卓弥, 桜井通晴, 地方自治体の2007年問題 大量退職時代のアウトソーシング 市場化テスト, 官公庁通信社, 2005年.

内閣府公共サービス改革推進室, よくわかる! 公共サービス 改革法(市場化テスト法)入門, ぎょうせい, 2006年.

_____, 詳解 公共サービス改革法 Q&A『市場化テスト』, ぎょうせい, 2006年.

_____, <http://www5.cao.go.jp/koukyo/index.html>, 홈페이지용 참조, 公共サービス改革法(入門編), 2006年.

_____, 公共サービス改革基本方針, 2006年=平成18年 9月 5日 閣議決定.

<http://www.kisei-kaikaku.go.jp/>, 規制改革 民間開放推進会議 홈페이지

<http://www.gyokaku.go.jp/index.html>, 行政改革推進本部事務局 홈페이지

<http://www.gyokaku.go.jp/genryoukourituka/index.html>, 行政減量 効率化 有識者会議 홈페이지

<http://www8.cao.go.jp/pfi/index.html>, PFI推進委員会 홈페이지

規制改革 民間開放推進会議, 規制改革 民間開放の推進に関する第2次 答申『小さくて効率的な政府』の実現に向けて 官民を通じた競争と消費者 利用者による選択, 2005年=平成17年 12月 21日.

規制改革 民間開放推進会議, 中間とりまとめ 官製市場の民間開放による『民主導の経済社会の実現』, 2004年=平成16年 8月 3日.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研究所, 『日本版PPP研究会』, 日本版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公共サービスの民間開放)の実現に向けて 市場メカニズムを活用した経済再生を目指して (中間とりまとめ), 2002年=平成14年 5月 22日.

2. 국내 문헌

안현효, IMF 이후 민영화와 정부지분 매각의 현황과 문제점, 경제발전학회보고서, 2005. 2. 25.

박영호,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세계경제’, 1999. 10. 20.

박명호,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사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30.

이용상, 일본의 구조개혁 정책 변화 연구 - 철도사업과 우정사업민영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Vol.15, No.4), 2003.

김세곤, 일본에 있어서 공립보육소의 민영화 추진 동향 -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2004.

3. 그 외 영문 문헌

W. Noel Keyes, Government Contracts In A Nutshell, West Group, 2004.

Jody Freeman, THE PRIVATE ROLE IN PUBLIC GOVERNANCE,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5 N.Y.U.L. Rev. 543, June, 2000.

_____, PUBLIC VALUES IN AN ERA OF PRIVATIZATION: EXTENDING PUBLIC LAW NORMS THROUGH PRIVATIZATION, The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Harvard Law Review, March, 2003, 116 Harv. L. Rev. 1285.

Hugh Collins, Regulating Contract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Edition (February 6, 2003)

Colin Scott, Regulation(International Library of Essays in Law and Legal Theory. Second Series), Ashgate Pub Ltd(2003)

법률 번역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취지)

제 1 조 이 법률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그 실시를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려는 관점에서 이것을 재검토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고안(아이디어)이 반영될 것이 기대되는 一體의 업무를 선정하여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에 붙임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의 유지 향상 및 경비의 삭감을 도모하는 개혁(이하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기본이념,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책정,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의 수속(절차), 낙찰한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설치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기관’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내각에 설치하는 기관(내각부를 제외한다.)
2. 내각부, 宮内廳 및 내각부설치법(1999년=平成11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3. 국가행정조직법(1948년=昭和23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①

- 4. 내각부설치법 제39조 및 제55조 및 宮内廳法(1947년=昭和22년 법률 제70호) 제16조 제2항의 기관 및 내각부설치법 제40조 및 제56(宮内廳法제18조제1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특별한 기관
- 5.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 2의 시설 등 기관 및 동법 제8조의 3의 특별한 기관

이 법률의 ‘국가의 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平成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법인법[2003년=平成15년 법률 제112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동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및 특수법인(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를 가지고 설립된 법인이며 總務省設置法[1999년=平成11년 법률 제91호] 제4조 제15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주식회사인 것을 제외한다.]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 말한다.

이 법률에서의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等’이란 국가의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의 장, 국립대학법인의 학장,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機構長 및 특수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 이 법률에서 공공서비스라고 하면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행해지며 국민에 대한^③서비스의 제공 그 외의 공공의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업무(행정처분을 제외하다.) 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가.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관리의 업무

- 나. 연수의 업무
- 다. 상담의 업무
- 라. 조사 또는 연구의 업무
- 마. 가에서 라까지 열거하는 것 이외,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반드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스스로 실시할 필요가 없는 업무

2. 특정공공서비스

이 법률에서 ‘특정공공서비스란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행해지며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그 이외의 공공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업무이며, 제5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해, 법률^⑤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관민경쟁입찰’이란 다음에서 열거하는 수속(절차)을 말한다.

- 1.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제7조에 규정하는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을 말한다. 다음 항의 제1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에서 선정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⑥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기관등과 민간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者를 결정하기 위한 수속(절차)이며, 제3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
- 2.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방침에서는 선정된 지방공공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者를 결정하기 위한 수속(절차)이며, 제3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

이 법률에서 ‘민간경쟁입찰’이란 다음에서 열거하는 수속(절차)을 말한다.

- 1.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서 선정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사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者

를 결정하기 위한 수속(절차)이며,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

2.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방침에 의해서 선정된 지방공공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사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者를 결정하기 위한 수속(절차)이며, 제3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

이 법률에서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란 제20조 제1항(제23조에서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에 의하며 위탁에 근거한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⑧

이 법률에서 ‘법령의 특례’란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자격,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 등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長에 의한 감독상의 조치, 규제 등의 完備 그 이외의 특례에 관해 제5장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특례 및 政令 또는 主務省令에 의해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각각 政令 또는 主務省令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말한다.

(기본이념)

제 3 조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전체 안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에 대해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실시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아래에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고안(아이디어)을 적절히 반영시키며, 국민을 위한 보다 良質이고 廉價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실시하는 것이다.

前項의 재검토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가운데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실시할 필요가 없

는 것은 폐지한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제 4 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은 前條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고 한다.)에 따라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며, ① 官민경쟁입찰 혹은 민간경쟁입찰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 외에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관여 그 외의 규제를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고안(아이디어)이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행정기관은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존중하면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을 가능케 하는 환경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 5 조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에 관해 재검토를 실시하며, 官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의 특정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 외에 지방공공단체의 관여 그 외의 규제를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고안(아이디어)이 실시하려는 특정공공서비스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특정공공서비스의 적정하며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책무)

제 6 조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창의와 고안(아이디어)을 살리면서, 업무의 공공성을 근거로 이것을 적정 하면서 확실히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 장 공공서비스개혁 기본방침 등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

제 7 조 內閣總理大臣은 미리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과 협의하여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案을 작성하여 內閣에 결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①개혁기본방침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실시해야^②할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3.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해 정부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특정공공서비스의 범위의 재검토 그 외의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와 관련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하다.) 에 대한 계획(다음호에서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지방공공단체의 대처방안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한 계획
5. 국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서 선정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이하 ‘국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라고 한다.)의 내용 및 이것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6.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서 선정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이하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라고 한다.)의 내용 및 이것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7. 폐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의 내용 및 이에 수반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8. 前號에서 열거하는 것 이 이외,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內閣總理大臣은 前項 제3호에서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의 案을 정하려고 할 때는 政令으로 정하며, 미리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그 실시를 스스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의 범위^③및 이것에 관하여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內閣總理大臣은 政令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前項에 규정하는 의견의 청취가 적절히 실시되도록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에 대해 해당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그 내용, 그 외의 참고가 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 인터넷의 이용 그 외, 적절한 방법에 ^④하여 공표한다.

內閣總理大臣은 제2항 제4호에서 열거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의 案을 정하려고 할 때는 政令으로 정하며, 미리 지방공공단체가 그 특정 공공서비스에 관계되어 그 실시를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 및 이것에 관계되는 정부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內閣總理大臣은 공공서비스^⑤개혁기본방침의 案을 정하려고 할 때는 국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제37조에서 규정하는 국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5장까지 동일하다.)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內閣總理大臣은 매년도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을 재검토하여 필요가 생겼을 때는 미리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과 협의하여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변경의 案을 작성하고, 內閣에 결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內閣總理大臣은 前項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기간의 종료 또는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⑧의 실시기간의 종료에 맞추고, 해당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계속 수행시킬 필요성 그 외, 그 업무의 전반에 걸치는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가 생겼을 때는 미리 국가 행정기관 등의 長과 협의하여 공공서비스 개혁기본방침의 변경案을 작성한다.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7항의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內閣總理大臣은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內閣의 결정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방침)^⑨

제 8 조 지방공공단체의 長은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실시에 관한 방침(이하 ‘실시방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한다.

실시방침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 1.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①

- 2.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공공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의 내용
- 3.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공공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의 내용
- 4. 前3號에서 열거하는 것 이 외,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前項 제2호 및 제3호에서 열거하는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정하려고 할 때는 미리 민간사업자가 특정공공서비스 중 그 실시를 스스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長은 前項에서 규정하는 의견의 청취가 적절히 실시되도록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특정공공서비스의 내용 그 외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인터넷의 이용 그 외,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한다.

^④ 지방공공단체의 長은 실시방침을 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한다.

제 3 장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

제 1 절 국가의 행정기관 등에 의한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등^⑤

(관민경쟁입찰 實施要項)

제 9 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있어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서비스 마다 지체 없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를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제정 또는 개폐 후 지체 없이),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따라서 관민경쟁입찰 실시要項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민경쟁입찰 實施要項은 관민경쟁입찰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상세한 내용 및 그 실시를 위해 확보되어야 할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質에 관한 사항
2.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條에서 정하는 것 이외,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에게 필요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의 모집에 관한 사항
5.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者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 그 외의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者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관민경쟁입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의 사이에서 관민경쟁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교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개시(공개)에 관한 사항
8.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케 하는 국유재산(國有財産法[1948년=昭和 23년 법률 제7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14조 제2항 제7호에 있어서도 같다.)에 관한 사항
9.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직원 가운데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는 者에 관한 사항
10.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령의 특례에 관한 사항
11.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 등에 대해서 보고해

야 할 사항, 비밀을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그 외의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하며 확실한 실시의 확보를 위해서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2.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의 배상에 관계되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國家賠償法[1947년=昭和 22년 법률 제125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해당 손해의 배상의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求償에 응할 책임을 포함한다.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있어서도 같다.)에 관한 사항
13.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제7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
14. 그 외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前項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하며 확실한 실시(동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이행을 포함한다. 제4호에 있어서도 같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가. 지식 및 능력 ③
- 나. 경리적 기초
- 다. 기술적 기초
- 라. 그 외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하며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의 개시(공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1. ④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 필요로 하였던 경비
2.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 필요로 하였던 인원
3.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 필요로 하였던 시설 및 설비
4.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 있어서의 목적의 달성의 정도

국가의 행정기관등의 長 등은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하려고 할 때는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⑤ 행정기관등의 長 등은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前2項의 규정은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결격사유)

제10조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者는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成年被後見人 혹은 被保佐人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것과 동일하게 ⑦ 취급되고 있는 者
2. 破産手續(節次)開始의 결정을 받아 復權을 얻지 않는 者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者
3. 禁錮이상의 刑(이것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刑을 포함한다.)에 처벌 받았거나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의 刑

에 처벌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유효 종료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는 者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본 條에서는 ‘폭력단원’이라고 한다.)또는 폭력단원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者
5.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어 그 해제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는 者
6. 영업에 관계되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前各號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것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가운데 前各號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8.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者가 그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者
9. 그 者의 母회사 등(그 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者를 말한다. 다음 호에 대해서도 같다.)이 前各號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者
10. 그 者 또는 그 者의 母회사 등이 다른 업무 또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者가 해당 다른 업무 또는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실시 또는 해당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者
11. 법령의 특례에 대해 정해진 해당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者
12.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당 위원과 政令으로 정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者

(관민경쟁입찰에의 참가

제11조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는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에 따라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該當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 대해서도 같다.] 을 포함한다. 이하는 동일하다.)를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실시한다.

- 1.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質의 유지 향상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시 체제 및 실시 방법
- 2. 입찰금액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에 따라서 前項 제1호에서 열거하는 사항 및 인건비, 물건비 그 외의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경비의 금액을 기재한 서류(해당 서류에 기재해야 할 ②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는 동일하다.)를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지체 없이, 前2項의 서류의 사본을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및 낙찰자 등의 결정)

제12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③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前條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전부에 관

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前條의 평가에 따라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보다도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質의 유지 향상 및 경비의 삭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신청을 한 민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민간사업자 중 가장 유리한 신청을 한 者(會計法[1947=昭和 22년 법률 제35호]제29의6 제1항 단서 조항의 경우 그 외, 가장 유리한 신청을 한 者를 낙찰자로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으로 유리한 者)를 낙찰자로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와 행정기관 등의 長은 前條의 평가에 따라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국가가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보다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質의 유지 향상 및 경비의 삭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신청을 한 민간사업자가 없는 경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해당 ②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다.

국가와 행정기관 등의 長은 前2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낙찰자의 이름 또는 명칭, 낙찰금액, 낙찰자의 결정 이유 및 신청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 政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취지, 그 이유 및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③내용에 관한 사항 중 政令으로 정한 것을 공표해야 한다.

제 2 절 국가의 행정기관 등에 의한 민간경쟁입찰의 실시 등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

제14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대해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서비스 마다, 지체 없이 (법령의 제정^①또는 개폐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정 또는 개폐 후 지체 없이),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에 따라서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은 민간경쟁입찰의 실시에 관해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상세한 내용 및 그 실시에 있어 확보^②되어야 할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質에 관한 사항
2.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條에 있어 준용하는 제10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 민간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로서 필요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민간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の 모집에 관한 사항
5.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 그 외의 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시상황에 관련된 정보의 개시(공개)에 관한 사항
7.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로서 사용시킬 수 있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8. 공공서비스의 민간사업자가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령의 특례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 비밀을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그 외의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의 확보를 위해서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의 배상에 관계되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사항
11.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제7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외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前項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同項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이행을 포함한다. 제4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1. 지식 및 능력
2. 경리적 기초
3. 기술적 기초
4. 그 외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개시(공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 필요로 하였던 경비

- 2.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예 필요로 하였던 인원
- 3.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예 필요로 하였던 시설 및 설비
- 4.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예 있어서의 목적 달성의 정도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하려고 할 때는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포해야 한다.

前2項의 규정은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⑥

(준용)

제15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0조 및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실시하는 민간경쟁입찰에 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12조 중 ‘제9조 제2항 제5호’는 ‘제14조 제2항 제5호’로, ‘前條 제1항 및 제2항’은 ‘前條 제1항’으로, ‘그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官民競争入札等監理委員會의 論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로, 제13조 제1항 중 ‘前條의 평가에 따라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보다도’는 ‘前條의 평가에 따라’로, ‘유리한 신청을 한 민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민간사업자 중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라는 것과, 同條제3항 중 ‘前2項’은 ‘제1항’으로, ‘政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관

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취지, 그 이유 및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 政令으로 정하는 것’은 ‘政令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다.

제 3 절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등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

제16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방침에 대해 관민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공공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이하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라고 한다.)마다 지체 없이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한다.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은 관민경쟁입찰의 실시에 따라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 1.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상세한 내용 및 그 실시에 즈음하여 확보되어야 할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질에 관한 사항
- 2.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기간에 관한 사항
- 3. 다음 條에 대해 준용하는 제10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로서 필요한 자격에 관한 사항
- 4.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の 모집에 관한 사항
- 5.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者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 그 외의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者の 결정에 관한 사항
- 6. 관민경쟁입찰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의 사이에서 관민경쟁

-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교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해 종래의 실시 상황에 대한 정보의 개시(공개)에 관한 사항
 8.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公有財産(지방자치법[昭和22년(1947년) 법률 제67호]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公有財産을 말한다.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에 관한 사항
 9.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가운데,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로 사용되는 者로서 해당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者가 되기를 희망하는 者에 관한 사항
 10.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령의 특례에 관한 사항
 11.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 비밀을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그 외의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적정하면서 확실한 실시의 확보를 위해서 제23조에 준용되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2.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에 관계되는 제23조에서 준용하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해당 손해의

- 배상을 책임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求償에 대응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에 관한 사항
13. 그 외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전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하면서 확실한 실시(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이행을 포함한다. 제4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 지식 및 능력
2. 경리적 기초
3. 기술적 기초
4. 그 외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의 개시(공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시 필요로 하였던 경비
2.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시 필요로 하였던 인원 ④
3.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시 필요로 하였던 시설 및 설비
4.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시 있어서의 목적의 달성의 정도

지방공공단체의 長은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하려고 할 때는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의제의 기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長은 官民 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전2항의 규정은 官民 경쟁입찰 실시요항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⑦ (準用)

제17조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官民 경쟁입찰에 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5호 중 ‘제22조 제1항’은 ‘제23조에 대해 준용하는 제22조 제1항’으로, 동조 제12호,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중에서 ‘官民 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는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합의제의 기관’으로, 동조 중에서 ‘제9조 제2항 제5호’는 ‘제16조 제2항 제5호’로, 제13조 제1항 중에서 ‘회계법(昭和22년(1947년) 법률 제35호)제29조의 6 제1항 단서 규정의 경우 그 이외의 가장’은 ‘가장’으로, 동조 제3항 중 ‘政令’은 ‘規則’이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다.

제 4 절 地方公共團體에 의한 民間競爭入札의 實施 等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

제18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방침에 대해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공공단체의 특정공공서비스(이하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라고 한다.)마다 지체 없이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한다.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은 민간경쟁입찰의 실시에 대해서 다음에서 열거하^㉑ 사항을 정한다.

1.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상세한 내용 및 그 실시함에 있어 확보되어야 할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

상 공공서비스의 質에 관한 사항

2.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조에 관해 준용하는 제10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민간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에게 필요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민간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의 모집에 관한 사항
5.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 그 외의 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시상황에 대한 정보의 개시(공개)에 관한 사항
7.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公有財産에 관한 사항
8.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령의 특례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 비밀을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그 외의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하면서 확실한 실시의 확보를 위해서 제23조에 대해 준용하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에 관계되는 제23조에 준용되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관한 사항

11. 그 외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전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고
려하여 해당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
과 ③한 실시(동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이행을 포함한
다. 제4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최
소한의 것에 그쳐야 한다.

- 1. 지식 및 능력
- 2. 경리적 기초
- 3. 기술적 기초
- 4. 그 외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의 개시(공개)
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1.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
시에 필요로 하였던 경비
- 2.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
시에 필요로 하였던 인원
- 3.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
시에 필요로 하였던 시설 및 설비
- 4.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관한 종래의 실
시에 있어서 목적 달성의 정도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하려고 할 때는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의제의 기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을 정했을 때는 지
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전2항의 규정은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
한다.

⑦

(준용

제1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및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민간경쟁입찰에 대해 준용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10조 제5호 중 ‘제22조 제1항’은 ‘제23조
에 대해 준용하는 제22조 제1항’으로, 동조 제12호 중 ‘관민경쟁
입찰등감리위원회’는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의제의 기관’
으로, 제12조 중 ‘제9조 제2항 제5호’는 ‘제18조 제2항 제5호’로
‘전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조 제1항’으로, ‘그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관민경
쟁입찰등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로, 제13조 제1항 중 ‘전조의 평
가에 따라서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보다’는 ‘전조의 평가에 따라’로, ‘유리한 신청을 한
민간사업자가 있을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신
청을 한 者(會計法[昭和 22년(1947년) 법률 제35호]) 제29의 6 제1
항 단서의 경우 그 이외 가장’ 이라는 것은 ‘가장 유리한 신청을
한 者(가장)’로, 동조 제3항 중 ‘전2항’은 ‘제1항’으로, ‘政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
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취지, 그 이유 및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
政令으로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

제 4 장 민간사업자가 낙찰자가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공공서비스의 실시 등

제 1 절 계약

(계약의 체결 등)

제20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제13조 제1항(제15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낙찰자로서 결정했을 경우에는 官民競争入札 실시요항 또는 民間競争入札 실시요항^① 및 신청의 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해 官民競争入札 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民間競争入札 대상 공공서비스(이하 ‘대상 공공서비스’라고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한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前項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의 이름 또는 명칭 및 해당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 政令으로 정해야 할 것을 공표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

제21조^②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 및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대상 공공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前條 제1항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官民競争入札等監理委員會의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①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약의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중 政令으로 정해야 할 것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해제 등)

제22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
 - 가. 거짓 그 외 부정의 행위에 의해서 낙찰자가 되었을 때.
 - 나. 제9조 제2항 제3호 혹은 제10조(제1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민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에게 필요한 자격의 요건 또는 제14조 제2항 제3호 혹은 제15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10조(제1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민간경쟁입찰에 참가하는 者로서 필요한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 다. 법령의 특례에 있어 정해진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로서 필요한 자격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 라. 제21조 제1항의 계약에 따라서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었을 때 또는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 마. 라에서 열거하는 경우 이외 제21조 제1항의 계약에 있어 정해진 사항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 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 혹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했을 때.
 - 사.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했을 때.
 - 아. 법령의 특례에 있어 정한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의 해제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그 者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 그 외의 대상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者

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해서 파악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했을 때.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前章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새로운 관민경쟁입찰 혹은 민간경쟁입찰의 실시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치 그 외의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를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려고 할 때에는 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의 諮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 내용 및 이유를 공표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준용)

제23조 前3條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및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21조 제1항 중 ‘제13조 제1항(제15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7조 및 제19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13조 제1항’으로, 동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항 중 ‘政令’은 ‘규칙’으로, 동조 제2항 및 전조 제3항 중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는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의제의 기관’으로, 동조(제22조) 제1항 제1호 나 중 ‘제9조 제2항 제3호 혹은 제10조’는 ‘제16조 제2항 제3호 혹은 제17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10조’로, ‘제14조 제2항 제3호 혹은 제15조’는 ‘제18조 제2항 제3호 혹은 제19조’로, 동호 바 중 ‘제26조 제1항’은 ‘제28에 있어 준용하는 제26

조 제1항’으로, 동호 사 중 ‘제27조 제1항’은 ‘제28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27조 제1항’으로, 동항 제2호 중 ‘대상 공공서비스’는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혹은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다.

제2절 공공서비스의 실시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등의 실시)

제24조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제21조 제1항(前條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에 따라서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秘密보유(保持)의무 등)

제25조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그 者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원) 혹은 그 직원 그 외의 前條의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者 또는 이러한 者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해서 파악한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

前條의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者는 형법(1907년=明治40년 법률 제45호)그 외의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3절 감독

(보고의 징수 등)

제26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의 상황에 관계되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검사를 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前項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④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가^⑤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했을 때에는 해당 조치의 내용 및 해당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를 지체 없이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국가의^④ 행정기관 등의 長의 지시 등)

제27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상 공공서비스의 적정과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前條 제4^①항의 규정은 前項의 규정에 의해 지시를 했을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준용)

제28조 前2조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및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해 준용한다. ②의 경우에 있어 제26조 제4항 중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는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의제의 기관’이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다.

제5장 법령의 특례

제1절 통칙

(법령의 특례의 적용)

제29조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재정법의 특례)

제30조 국가가 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인해 지출해야 할 연한은 해당 會計年度 이후 十會計年度 이내로 한다.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의 특례)

제31조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1953년=昭和28년 법률182호)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이하 이 항에 대해 ‘직원’이라고 한다.) 가운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 등이 제20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관련되는 대상 공공서비스의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시^①기간 또는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시기간(이하 이 항에 있어서 ‘실시기간’이라고 한다.)의 첫날 이후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명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者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해당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되는 者가(해당 대상 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대상 공공서비스 종사자’라고 한다.)되기 위한 퇴직(동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퇴직에 한정한다. 다음 항에 있어 ‘특정퇴직’이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계속하여 대상 공공서비스 종사자로서 재직한다.

후에 계속해서 실시기간의 말일의 다음날까지 다시 직원이 된 者가(이하 이 조에 대해 ‘재임용직원’이라고 한다.) 퇴직했을 경우, 그 者에 대한 동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과 관련되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앞의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후의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임용직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있어 그 者에 대한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액수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동법 제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초재직기간(이하 이^②항에 대해 ‘기초재직기간’이라고 한다.)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정 퇴직과 관련되는 퇴직수당(이하 이 조에 있어 ‘앞의 퇴직수당’이라고 한다.)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기초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재임용직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者에 대한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액수는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政令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동호에서 열거하는 액에서 제2호에서 열거하는 액을 공제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다만, 그 액이 제3호에서 열거하는 액보다 적을 때는 동호에서 열거하는 액으로 한다.

1.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2조의 3에서 제6조의 4까지 및 부칙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국가공무원등퇴직수당잠정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59년=昭和34년 법률 제164호) 부칙 제3항, 국가공무원등퇴직수당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73년=昭和48년 법률 제310호) 부칙 제5항에서 제8항까지,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平成15년 법률 제62호) 부칙 제4항 및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平成

17년 법률 제115호) 부칙 제3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액수

2. 재임용직원이 지급을 받은 앞의 퇴직수당의 액수와 해당기관의 퇴직수당의 지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관련되는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를 합계한 액수
3.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액

전3항의 규정은 재임용직원의 퇴직 전에 그 者에 대해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앞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동법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앞의 퇴직수당을 반납시키게 되었^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임용직원이 퇴직하여 그 者에 대해 아직 해당 퇴직과 관련되는 퇴직수당(그 액을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도 같다.)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그 者에 대해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앞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㉕을 때 또는 동법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앞의 퇴직수당을 반납시키게 되었을 때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액에서 동항 제3호에서 열거하는 액을 공제하여 얻은 액(다음 항에 있어서는 ‘특례가산액’이라고 한다.)은 지급하지 않는다.

재임용직원이 퇴직하고 그 者에 대해 해당 퇴직과 관련되는 퇴직수당의 지급을 한 후에 있어서는 그 者에 대해서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앞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동법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앞의 퇴직수당을 반납시키게 되었을 때는 동법 제1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

는 各省各廳의 長은 特種가산액수에 相當하는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反擔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同法 제12조의 3 제2항의 規定을 準용한다.

제 2 절 特種공공서비스

(직업안정법의 特례)

제32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公共직업안정소의 업무(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特種업무’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公共서비스 실시 민간 사업자로서 特種업무를 실시하는 시설에 대하여 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① 職業안정법(1947년=昭和22년 법률 第141호) 第30조 第1항의 허가를 받은 者가 아니면 안 된다.

1. 事業의 經營관리와 관련되는 업무 또는 기술적 및 전문적인 지식 필요로 하는 업무의 직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오로지 40세 이상의 者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이것들에 부수 하는 업무
2. 事業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45세 이상 60세 미만 의 者 그 외 厚生勞動省令으로 정한 者를 오로지 대상으로 하여 직업의 선택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관한 이해를 시켜 취직활동을 실시하여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직업지도 및 이것에 부수하는 업무

전항의 公共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特種업무를 실시하는 시설에 있어 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職業소개 사업에 관계되는 국가 이외의 者로부터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지 않을 때는 해당 職業소개 사업에 대해서는 職業안정법 第32조의 11의 規定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2항에서 定하는 것 이외,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의한 特種업무를 실시에 관계되는 ③ 필요한 사항은 厚生勞動省令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등의 特례)

제33조 國民연금법(昭和34년 법률 第141호) 第88조 第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료(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보험료’라고 한다.)의 수납 에 관한 업무 中 다음에서 열거하는 ①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特種업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公共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아울러 피보험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납부수탁업무’라고 한다.)를 실시한다.

1. 國民연금법 第88조의 規定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者이며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보험료체납자’라고 한다.)에 대해 보험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의 통지 및 납부되어 있지 않은 이유의 확인을 실시하는 업무
2.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면접 그 외의 방법에 의해 보험료의 납부의 권장 및 청구를 실시하는 업무
3. 第1호의 規定에 따라 확인한 이유 그 외의 前2호 업무의 실시 상황을 厚生勞動省令으로 정한 것에 의해 社會保險廳長官에 보고하는 업무

전항의 公共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납부수탁업무를 적정하 면서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厚生勞動省令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전항의 公共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國民연금법 第92조의 3 第1항 第2호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은 者로 간주하고, 동조 第3항에서 第5항까지 ② 및 동법 第92조의 4 및 第92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92조의 3 제3항 중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했을 때’는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2006년=平成18년 법률 제51호)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업무의 실시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으로, 동법 제92조의 4 제1항 중 ‘전조 제1항’은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다.

제2항의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험료의 납부청구의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법(1949년=昭和24년 법률 제205호)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厚生労働省令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실시하는 특정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여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者(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특정업무종사자’라고 한다.)는 면접의 방법에 의해 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社會保險廳長官이 발행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며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⑥ 특정업무종사자는 특정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그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운을 해치는 언동에 의해 사람을 곤혹(困惑)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특정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거짓 그 외 부정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 그 외의 보험료 체납자의 보호가 부족하거나 또는 특정업무의 적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厚生労働省令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社會保險廳長官은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서류의 작성 혹은 보존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장부서류를 작성했을 때.
2. 특정업무종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3. 특정업무 종사자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4.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동항의 厚生労働省令에서 정하는 행위를 실시했을 때.
5.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납부수탁 업무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할 때.

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92조의 4 제2항 또는 제92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했을 때.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9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혹은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장부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92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혹은 검사를 거절하며,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前各項에 정하는 것의 이외,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의한 특정업무 및 납부수탁 업무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厚生労働省令으로 정한다.

(호적법등의 특례)

제34조 지방공공단체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업무를 관민^①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戶籍法(1947년=昭和22년 법률 제224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항의 호적등본 혹은 초본 혹은 호적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혹은 동법 제117조의 4 제1항의 磁氣디스크로 調製된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하 이 호에 있어서는 ‘호적등본등’이라고 한다.)의 교부(해당 호적에 기재되어 또는 기록되어 있는 者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항이 제외된 호적의 등본 혹은 초본 혹은 제외된 호적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혹은 동법 제117조의 4 제1항의 磁氣디스크로 調製된 것에 제외된 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증명한 서면(이하 이 호에 대해 ‘제적등본등’이라고 한다.)의 교부(해당 제외된 호적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되어 있는 者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의 청구의 접수 및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호적등본등 또는 제적등본등의 인도
2. 地方稅法(1950년=昭和25년 법률 제226호) 제20조의 10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조의 증명서(이하 이 호에 있어서는 ‘납세증명서’라고 한다.)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납세증명서의 인도
3. 外國人登錄法(1952년=昭和27년 법률 제125호) 제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항의 登錄原票의 복사 또는 登錄原票 기재사항 증명서(이하 이 호에 있어서는 ‘登錄原票의 복사 등’이라고 한다.)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登錄原票의 복사 등의 인도

4. 住民基本臺帳法(1967년=昭和42년 법률 제81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항의 주민표의 복사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이하 이 호에 있어서는 ‘주민표의 복사 등’이라고 한다.)의 교부의 청구의 접수 및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주민표의 복사 등의 인도
5. 住民基本臺帳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항의 호적의 附票의 사본(이하 이 호에 대해 ‘호적의 부표의 사본’이라고 한다.)의 교부(해당 호적의 附票에 기재되어 있는 者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의 청구의 접수 및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호적의 附票의 사본의 인도
6. 市町村(특별구의 區長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指定都市에 있어서는 市長 또는 區長으로 한다.)에 의해서 작성하는 인감에 관한 증명서(이하 이 호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라고 한다.)의 교부(해당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者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의 청구의 접수 및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인감증명서의 인도

전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 있어 ‘특정업무’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안 된다.

1. 그 인적 구성에 비추어 특정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특정업무를 적정하고 확^②실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로서 總務省令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그 외 특정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總務省令

法務省令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4. 그 외 總務省令 法務省令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지방공공단체는 제23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20조 제1항의 계약 (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단지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려고 할 때^③ 미리,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공공단체는 제23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취지,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해당 공공^④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특정업무의 내용 및 그 기간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지방공공단체가 제23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협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⑤ 해당할 때는 기간을 정하고, 그 실시하는 특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을 때.
- 2. 제28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⑥했을 때.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제23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취지, 그 이유 및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는 그 취지, 그 이유, 해당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해당 정지를 명한 특정업무의 내용 및 그 기간을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체의 기관에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는 특정업무 취급사업소(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특정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者が 특정업무에^⑧ 관해서 파악한 정보를 해당 특정업무 취급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前各項에서 정하는 것 이외,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의한 특정업무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 가운데,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總務省令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法務省令^⑨으로, 동항 제5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總務省令 法務省令으로 정한다.

제 6 장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공공서비스의 실시 등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제35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은 제13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 및 해당국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작성한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제36조 지방공공단체는 제17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13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 및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長이 작성한 제17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11조 제2항의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등

제 1 절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설치)

제37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그 외의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개혁의 실시의 과정에 있어 그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부에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所掌事務)

제38조 위원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內閣總理大臣 또는 內閣總理大臣을 통하여 관계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①에 대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고의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② 內閣總理大臣 또는 관계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근거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해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長이 실시하는 통지는 內閣總理大臣을 통해서 실시한다.

(조직)

제39조 위원회는 위원 13인 이내로 조직한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위원)

제40조 위원은 공공서비스에 關해서 뛰어난 識見을 가지는 者 중에서 內閣總理大臣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제41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補缺)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殘任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했을 때는 해당^④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실시한다.

(위원장)

②

제42조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의 互選에 의해 이것을 정한다.

위원장은 會務를 總理하며^③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위원)

①

제43조 위원회에 專門(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者 중에서 內閣總理大臣이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사항에 관한 조사 심의가 종료했을 때는 해임된다.

③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사무국)

제44조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시키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이외,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①위원장의 命을 받으며 局務를 관리한다.

(보고의 징수 등)②

제45조 위원회는 그 소장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관청③ 경쟁입찰 혹은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政令에의 위임)

제46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의 이외, 위원회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 2 절 지방공공단체의 심의회 그 외의 합의제의 기관

제47조 지방공공단체는 지방공공단체의 長이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특정 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그 외의 경쟁의 도입

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의 실시의 과정에 있어서 그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관해서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者에 의해 구성되는 심의회 그 외의 합의제의 기관(다음 항에 이어서는 ‘合議制의 機關’이라고 한다.)을 둔다.

合議制의 機關의 조직 및 운영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8 장 雜 則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

제48조 국가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서비스 실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게 되는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른 관직(다른 국가[중앙정부]의 행정기관에 속하는 관직을 포함한다.)에 임용 하는 것의 촉진 그 외의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무의 위임)

제49조 국가의 행정기관의 長은 政令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국가(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소속의 직원 또는 다른 국가(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해석규정)

제50조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행정기관의 長이 실시하는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에 대한 회계법 제4장의 규정의 적

용을 방해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지방공공단체의 長이 실시하는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2편 제9장 제6절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과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主務省令)

제52조 이 법률에 있어서의 主務省令은 해당 사항에서 규정하는 법률 및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공정거래위원회 규칙,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공해등조정위원회 규칙, 공안심사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 규칙 및 선원중앙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외한다.)을 所管하는 內閣府 또는 各省의 內閣府令 또는 省令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공해등조정위원회, 공안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선원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공해등조정위원회 규칙, 공안심사위원회 규칙, 중앙노동위원회규칙 또는 선원중앙노동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政令에의 위임)

제53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의 이외, 이 법률의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 9 장 罰 則

제54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4조의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해서 파악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한 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제55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者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1. 제26조 제1항(제28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혹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者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 제1항(제28조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者

제5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사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사인)의 업무에 관해서 전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사인)에 대해서 동조의 刑을 科한다.

附 則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토)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

3. 내각부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3호의 3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3의 4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2006년=平成18년 법률 제51호)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서비스 개혁기본방침의 책정 및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의 실시의 감리에 관한 것.

법률번역

제37조 제3항의(표)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위원회의 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	------------------------------